



2019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2019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 2019년 해외수산협력센터 연대표

## 1 January

제7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규범회의

## 2 February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규범회의

## 3 March

대서양다량어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 4 April

제2차 한·MERCOSUR 무역협상

제161차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제12차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한 동북아 국가 협의회

제12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 5 May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규범회의

제5차 글로벌레코드(GR) 작업반 및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제27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연례회의

## 6 June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총회

제41차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

**7 July**

---

제5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

**8 August**

---

제10차 식량농업기구(FAO) 양식소위원회

---

**9 September**

---

제15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제41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

**10 October**

---

제26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

제4차 FAO/IMO/ILO 어선안전 공동 작업반 회의

---

**11 November**

---

제26차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정기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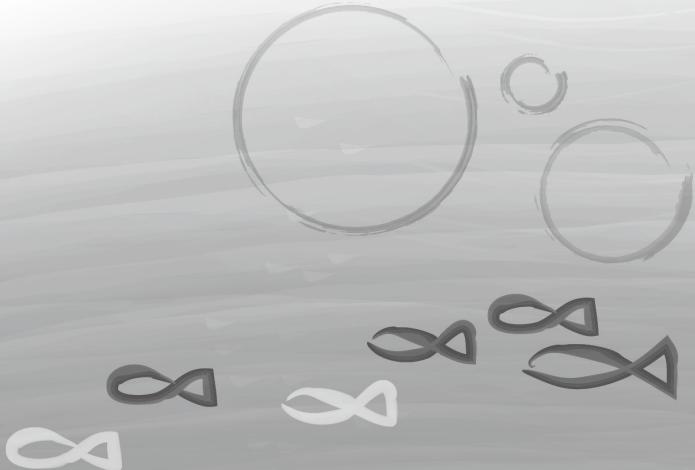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해양협력 워크샵

제17차 식량농업기구(FAO) 수산물교역위원회

---

**12 December**

---



# contents



## 제1장 일반기구

- 1-1. 제161차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 1-2. 제5차 글로벌레코드(GR) 작업반 및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 1-3.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총회
- 1-4. 제41차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 1-5. 제10차 식량농업기구(FAO) 양식소위원회
- 1-6. 제4차 FAO/IMO/ILO 어선안전 공동 작업반 회의
- 1-7. 제17차 식량농업기구(FAO) 수산물교역위원회
- 2-1. 제12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 3-1. 제12차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한 동북아 국가 협의회
- 3-2.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 총회

## 제2장 지역수산기구

- 1. 제7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 2.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 3. 제27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연례회의
- 4. 제5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 5. 제15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 6. 제41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 7. 제26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
- 8. 제26차 대서양다랑어보존위원회(ICCAT) 정기회의
- 9. 제16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 제3장 통상

1.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규범회의
2. 제2차 한·MERCOSUR 무역협상
3.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규범회의

## 제4장 기타

1.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해양협력 워크샵

# 1-1

## 제161차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61차 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  
(회의명 영문) 161<sup>st</sup> Session of the FAO Council
- 일시/장소 : 2019. 4. 8.~12. / 이탈리아 로마

#### 2. 참석규모

- 참가국 : 49개 이사회 회원국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최준욱 외 6명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최준욱
	국제협력총괄과장	김현태
	국제기구팀장	강거영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임성규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조안나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김정례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양재걸

### II. 회의결과

#### 1. 차기 사무총장 후보자 면담 내용

후보자	발언 내용
인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세계적으로 농업에 비해 수산업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상황임 → WFU의 설립은 매우 타당함(strongly justified)</li><li>UN은 현재 일본, 헬싱키 등에서 대학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WFU 반대에 대해서는 이 두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될 것임</li><li>WFU 설립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full support)를 드릴 것을 약속함 → DG가 되면 회원국들도 WFU를 지지하도록 돋겠음</li></ul>



조지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G가 되면 개도국 청년을 위한 '영 리더 이ни셔티브'를 추진 → 세계 유수 대학들과 연계한 (산림, 수산을 포함한 광의의) 농업교육 실시</li> <li>• 수산물 소비의 증가에 따라, 수산자원의 어획 · 관리 · 보호가 중요 → WFU 이니셔티브는 이와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함</li> <li>• DG 당선여부에 관계없이, WFU 아이디어를 지지하겠음</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G가 되면, 한국이 제안하는 것보다 확장된 패키지 구상(package initiative)을 추진하고자 함 → 가치체인의 관점에서 생산, 유통, 판매, 요리법, 식문화 등의 다양한 부문을 함께 아우르는 구상으로 확장</li> <li>• 이사회 회원국들과 미리 협의를 하면 당선 이후 추진이 쉬울 것임</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의 WFU 구상은 고무적(encouraging)임</li> <li>• COFI(수산위)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li> <li>• 프랑스는 한국의 구상에 최선의 고려(highest consideration)를 할 것임</li> </ul>

## 2. 후보자 연설회

### ■ 세계수산대학 관련 질의응답

- 후보자 연설(15분) 후 지역그룹별 질문 시간(그룹별 10분)에 아시아 지역그룹 대표(태국 공사)를 통하여 오후 순서(중국, 프랑스) 3번째 질문으로 제기됨

구분	발언 내용
태국 공사	(질문) 군소 도서 개도국들에게 역량 강화는 중요함. 세계수산대학과 같은 교육 및 기술 지원을 위한 지역 수준의 역량강화 센터(capacity building center) 설립의 필요성이 있음. 군소 도서 개도국들의 역량강화 방안에 관한 후보자의 견해는?
중국	(답변) 훈련, 기술 지원, 시장 서비스, 금융 서비스 등, 어떤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를 우선 파악한 후, 구체적인 요구에 맞게 지원해야 함.
프랑스	(답변) FAO에 수산업은 중요함. 책임 있는 어업에 관한 행동강령이 이를 잘 보여줌. 수산업에 관해서는 지역수산기구들이 자원의 보존 ·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지고 있음. 이것은 독특한(unique) 현상임. 농업이슈를 논의할 때 민간 영역 참여의 중요성을 많이 언급하지만, 지역수산기구에서는 민간 영역이 기구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논의하고 협력함. 수산업에 대한 FAO의 역할은 이러한 지역수산기구의 관리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임.

# 1-2

## 제5차 글로벌레코드(GR) 작업반 및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5차 글로벌레코드(GR) 작업반 및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작업반 회의  
(회의명 영문) The fifth Meeting of the Global Record Informal Open-Ended Technical and Advisory Working Group and the second Meeting of the TWG-IE
- 기간/장소 : 2019. 5. 12.~17.(5일간) / 서울

#### 2. 참석규모

- 참가자 : FAO 회원국 및 사무국, 비정부기구 전문가 등 1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국제협력총괄과 김현태 과장 외 14명

구분	기관명	소속부서	성명 및 직위
국제어선 정보등록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조업감사센터 해외수산협력센터	강거영書, 임성규事, 임영수主 조영복事, 반영은主, 김수연主 원태훈 전문관
항만국 조치협정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해사안전정책과 어선정책팀 수산물품질관리원 해외수산협력센터	강거영書, 임성규事, 임영수主 남창섭事 문상원主, 서범석主 강재연主, 이재룡主 원태훈 전문관
어선안전 실무회의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원양산업과 해사안전정책과 어선정책팀 해외수산협력센터	김현태課, 임성규事, 임영수主 양영진課, 정연주事, 금유화主 남창섭事 문상원主, 서범석主 이혜나 전문관, 원태훈 전문관



## II. 회의결과

### 1. ISSCFV\* 선박 분류 논의

\* 국제어선표준통계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Fishing Vessel)

- 사무국은 논의 초점이 선박의 기능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설명하며 ‘레저선’이나 ‘훈련선’은 현재 논의 방법과 맞지 않음을 지적
  - 하지만 회원국들은 레저선과 훈련선을 별도 항목으로 분류
- 벙커링선/텐더선(Bunkering vessels/Tenders), 지원 및 보조선(Support and auxiliary vessels), 예인선(towing vessels) 등 새로 추가
- 본 결정은 CWP(Coordinating Working Party)의 최종 승인 필요

### 2. ISSCFG\*, UN/LOCODE\*\* 논의

\* 국제어구표준통계분류 (International Standard Statistical Classification of Fishing Gear)

\*\* United Nations Code for Trade and Transfer Locations :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개발한 교역 및 운송 장소(항구)에 코드를 부여하는 시스템

- 회원국은 UN/LOCODE의 광범위한 항구 데이터 보유량을 높이 평가하며, 글로벌 표준이 될 수 있는 잠재성에 기대 표시
  - 하지만 아직 글로벌 표준으로서의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기타 국가 및 지역 코드와 병행하여 이용하기로 결정
- SSCFG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어 논의 없이 종료

### 3. 데이터 교류 메커니즘

- 사무국은 데이터 교류 메커니즘으로 UN/FLUX가 가장 유력함을 설명하고, 자동 데이터 교류 시스템에서도 전송 버튼을 눌러야만 데이터가 전송됨을 강조하며 자국 정보노출에 대한 회원국 우려 불식
- 중국 등 회원국은 방대한 자국 데이터 전송의 어려움
- 일부 회원국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수산기구의 정보 공유 역시 중요함을 지적

#### 4. 지정항구 및 국가 당국 데이터베이스 현황

- 사무국은 PSMA 웹사이트에서 지정항구(designated ports) 및 국가 연락처(contact point) 등록 방법을 설명
  - 회의 일자 기준, 24개국의 302개 지정항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정항구의 위치, 이름, 전화번호, 위도와 경도 등의 정보 입력
- 다수의 회원국이 PSMA 이행을 위한 첫 단계로써 항구지정의 중요성을 강조
  - 하지만 항만당국과 입항을 처리하는 당국이 다른 국가가 많아 해결 필요

#### 5. 글로벌 전자 정보교류 시스템 개발 옵션 논의

- 사무국은 글로벌 전자 정보교류 시스템의 세 가지 개발 옵션\*을 제시하고 회원국들의 의견 요청
  - \* 옵션 1 : pdf 파일을 이용한 정보 교류 시스템. 국가 정보 보안에서는 유리하나 자동 정보교류 불가
  - 옵션 2 :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정보교류 시스템 발명하여 적용
  - 옵션 3 : 현존하는 국가 및 지역 정보교류 시스템과 연동하는 글로벌 시스템 개발
- EU 등 회원국은 개발 비용 및 기간을 사무국에 질문하였으며,
  - 사무국은 옵션1은 50만 달러, 옵션2, 3은 100만 달러 정도 개발 비용이 예상되며, 연간 유지비용은 10만 달러 정도 예상
- 미국 등 일부 회원국은 자국 정보 노출을 극도로 꺼리며 옵션 1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국가는 옵션3을 지지함

# 1-3

##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총회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차 항만국조치협정(PSMA) 당사국 총회  
(회의명 영문) The Second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of FAO
- 기간/장소 : 2019. 6. 3.~7.(5일간) / 칠레 산티아고

#### 2. 참석규모

- 참가자 : 44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등 약 11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외수산협력센터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주무관	이진홍
	서울지원 주무관	이은혜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원태훈

## II. 회의결과

### 1. PSMA 당사국 총회 및 작업반 절차규정

- 제1차 당사국 총회에서 제안된 절차규정 개발 요청에 응하여 FAO 사무국은 규정 초안을 개발
  - 회원국은 초안을 개정 후 채택
- 절차규정 채택과 함께 규정에 따라 당사국 총회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

\* 의장 : EU, 제1부 의장 : 인도네시아, 부의장 : 미국, 지부티, 뉴질랜드, 칠레, 시에라리온

### 2. 정보 전송, 전자 교류, 발행

- 정보교류는 PSMA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선박과 지정항구, 국가 연락처 등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시스템 개발을 위한 논의가 지속됨
  - 현재 당사국의 절반 정도인 32개국이 331개 지정항구를 FAO에 등록
- 글로벌 시스템 개발을 위해 아이슬란드 정부에서 800,000달러를 제공하였으며, 개발 후 운영 비용으로 연간 100,000달러 소요 예상

### 3. 협정 이행 모니터링, 검토, 평가

- 항만국조치 협정 제24조는 협정 이행을 모니터링, 검토, 평가하기 위한 메커니즘 설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본 검토는 협정 발효 4년 뒤인 2020년에 검토 회의(review meeting)\*에서 이뤄질 예정

\* 2020.11.30.~12.3. EU에서 개최 예정

- FAO 사무국은 본 평가를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회원국의 검토가 이어짐
  - 사무국은 설문지 결과가 통계를 위해서만 이용되며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오직 협정 이행 검토를 위한 도구임을 강조
  - 설문기간은 2020. 6. 첫째 주 시작하여 2020. 9. 1. 마감으로 결정



## 4. 개도국 요구사항

- 항만국 협정(PSMA) 제21조는 개발도상국의 협정 이행을 지원할 의무를 명시
  - 노르웨이는 개도국의 제2차 당사국 총회 참석 자금 지원
  - 기여금을 제공한 국가(donor party)는 자신이 제공한 자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원은 여행비용 외에도 훈련, 지역통합, MCS, 정보교류 촉진 등 다양한 형태로 가능
- 현재 우리나라, EU, 미국, 아이슬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등 국가가 FAO 사무국에 1,500만 달러 정도의 기여금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협정 이행 지원
- 일본 등 국가는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를 통해서 개도국을 지원 중
- 자금 지원 이외에도 기술 및 전문지식, 우수 관행(best practices) 등의 지원도 중요

## 5. 제6부 작업반 (Part 6 Working Group)

- 6부 작업반은 개발도상국 지원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패널을 설립하고, 자금 지원 당사국(donor party)과 개발도상 당사국 각각 1개 국가 씩 2개 당사국을 패널 국가로 선출
  - 네덜란드(donor party)와 인도네시아(개도국)가 패널로 선출됨
  - 두 국가는 개발도상국들의 지원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결정할 것임
-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세계 다양한 기구 및 단체들의 역량개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가 존재하며, 이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 FAO 사무국은 이러한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를 모은 웹사이트를 개발 중
  - 지역 및 시기별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의 이행 상태와 펀딩 출처 등에 관한 정보 검색 가능할 것

# 1-4

## 제41차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41차 식량농업기구(FAO) 총회  
(회의명 영문) 41<sup>st</sup> Session of the FAO Conference
- 일시/장소 : 2019. 7. 23.~8. 1. /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
- 의장(조정관) : Mr. William Gibbons-Fly(미국)

#### 2. 참석규모

- 참가국 : FAO 수산위 33차 의장단 5개국(한국, 네덜란드, 가나, 미국, 페루), FAO 수산양식국  
관련 FAO 사무국 등 포함 약 1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수부 해양정책실장 최준욱 외 9명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최준욱
	국제기구팀장	강거영
	국제기구팀 사무관	임성규
	국제기구팀 주무관	임영수
부산광역시	수산정책과 팀장	김성우
	수산정책과 주무관	박해경
부경대학교	세계수산대학원장	이상고
	세계수산대학원 주무관	이은영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이혜나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원태훈



## II. 회의결과

### 1. 차기 FAO 사무총장 선거

- 총회참석 회원국을 대상으로 3명의 입후보자(중국, 프랑스, 조지아)가 질의응답 없이 투표 전 최종 연설 실시(6.22.) → 중국 후보 당선

### 2. 수산 관련 회의 내용

- '18년 개최된 제33차 수산위원회 결과 총회 보고 시(6.24.)
  - 항만국조치협정(PSMA) 개도국 역량강화 프로그램 재정 지원(5년간 200만 불)과 PSMA 작업반 회의 국내 개최('19.5.)를 발언하고,
  - FAO와 한국정부 간 WFU 공동시범사업 MOU 체결 등 그간의 추진경과를 설명하면서, 회원국의 참여를 요청

# 1-5

## 제10차 식량농업기구(FAO) 양식소위원회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제10차 식량농업기구(FAO) 양식소위원회  
(회의명 영문) FAO Sub-Committee on Aquaculture – 10<sup>th</sup> Session
- 일시/장소 : 2019. 8. 23.~27. / 노르웨이 트론헤임

#### 2. 참석규모

- 참가국 : 30개 회원국 등 약 1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해외수산협력센터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사무관	장용호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연구사	박정준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김아영

### II. 회의결과

#### 1.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행동강령(CCRF) 조항 중 양식 및 양식 기반 수산업에 관련된 이행 경과보고

- (결과 및 함의) 현행 메커니즘 적용에 따른 수혜국의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균형있는 발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나,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더 심도있는 연구가 뒷받침되는 새로운 정책 요소를 적용 및 개발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권고사항) ① 문서 검토 및 제언, ② 책임있는 어업에 관한 행동강령 이행을 위한 회원국의 자가 평가, 지역수준 및 국제 평가와 본 평가 방법 간의 지속적인 관련성 및 효용성에 대한 제언, ③ 보고 방법 및 과정 및 평가 결과 적용 개선을 위한 행동 제안



## 2. COFI 양식소위 권고사항 이행 경과보고

- (권고사항) ① COFI 양식 분과회의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한 FAO Fisheries 및 양식 부문의 노력에 관한 정보 및 배경 문서 검토 및 의견 제공,
- ② 진전 및 성과에 대해 숙고하고, 필요에 따라 회기간에 권고 사항을 강화하고 우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조언 제공,
- ③ 소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원국 및 관심있는 기증자에게 양식에 관한 우선 순위 영역을 시행하기 위한 재정 및/또는 인적 자원을 제공하도록 요청

## 3. COFI 양식소위 권고사항 이행 경과보고

- (주요 결과) 향후 검토가 필요한 분야를 제안했으며, FAO의 주요 지역과 세계 식량 안보의 어업 및 양식 산업이 식량 원천으로서 그리고 경제 성장 및 개발, 생계 및 수입에 기여한 중요한 역할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함

## 4. 점진적 관리 방법을 통한 양식에서의 어병 위험 방지 및 관리

- (권고사항) ①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검토 및 토의하고 양식 산업의 생물학적 안전 요소에 대한 지침 제공,
- ② 회원, 파트너 및 기증자에게 협력하여 세계 양식 체계의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 양식에 대한 생물 보안성을 선도하도록 촉구,
- ③ 모든 수준에서 양식 생물 보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자간 원조 장기적 글로벌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지원하기 위해 회원국 및 기금 제공 기관에 요청

## 5. 기아근절, 식량 확보 및 건강한 식습관 증진을 위한 양식의 기여 방안

- (권고사항) ① 영양과 식량 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양식의 역할을 토론할 것을 촉구,
  - ② UN FAO의 UN 영양 실천 운동 참여,
  - ③ 양식 개발에 영양 보급을 위한 회원국의 기회와 필요성 논의,
  - ④ FAO 양식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영양 및 식량 안보를 우선 순위에 고려할 것

## 6. 효율 증대, 환경 파괴 근절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 증진 및 이전 등 양식 분야 혁신

- (권고사항) ① 효율성 향상, 환경 영향 감소 및 기후 변화 퇴치에 있어 양식 혁신의 중요성 인식,
  - ② 양식 혁신에 대한 경험(성공 사례 및 학습 교훈 포함) 공유,
  - ③ 양식 개발에 영양 보급을 위한 회원국의 기회와 필요성 논의,
  - ④ 국제 공동체, 특히 현 양식 네트워크에서 자원 효율을 높이고 환경 및 기후 변화를 다루기 위한 양식 혁신에 관한 지식 생산물의 종합, 간접 및 교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권고
  - ⑤ 기술 협력 프로그램, 네트워킹, 남남 협력 또는 공공 민간 파트너십과 같은 다양한 메커니즘을 통한 양식 혁신 증진을 위한 기술 지원 강화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재정 지원

## 7. 지속가능한 양식 개발을 위한 관리 이행 및 지침에 관한 특별 이벤트

- (권고사항) ① 지속 가능한 양식 가이드 라인의 개발 및 이행 과정 검토
  - ② 2년마다 CCRF 조사에 대한 답변을 활용하여(CCRF 조사에 대한 답변의 기밀성을 상기하면서) 전 세계의 양식 생산 개발 전략 및 모범실무 사례 적용을 고려하는 방법론에 대해 조언
  - ③ CCRF 설문지, SAG 및 SDG의 구현에 대한 자문 참고
  - ④ 지속 가능한 양식 가이드 라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관련 프로그램 강화를 위한 자원 동원 노력 지원

**1-6****제4차 FAO/IMO/ILO 어선안전 공동 작업반 회의****I. 회의개요****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4차 FAO/IMO/ILO 어선안전 공동 작업반 회의
- 기간/장소 : 2019. 10. 21.~25. / 스페인 토레몰리노스

**2. 참석규모**

- 참가국 :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127개국
- 우리나라 대표단 : 외교부 주영국 대사관 송상근 공사 외 7명

기 관 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외교부	주영국 한국 대사관 공사	송상근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손소연
	어선정책팀 사무관	김도한
	어선정책팀 주무관	문상원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이혜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과장	배성수
한국선급	책임검사원	이동훈
	책임검사원	김규철

## II. 회의 내용

- 대한민국을 포함한 48개국이 협정 10주년이 되는 2022.10.11.까지 비준하겠다는 선언문\*에 서명하였고, 2개국\*\*이 추가로 협정 비준
  - \* 토레몰리노스 선언문(법적 구속력은 없음)에 서명(주영국 대사관 송상근 공사 참사관)
  - \*\* 협정 추가 비준국 : 쿠, 상투메프린시페(비준국 11개국 → 13개국)
- 선언문(안) 및 결의문(안)의 항만국 통제범위가 ‘관할수역(in there waters)’으로 협정상의 통제범위인 ‘항만 내(in a port)’와 불일치하여, 아국의 제안으로 ‘관할수역(in there waters)’ 문구 삭제
  - \* 근해선망 운반선의 어획물운반선(협정 제외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비준촉진에 관한 회의취지로 공식 회의에서 미논의. 다만, 별도확인 결과 제외가능

### 〈 주요국 동향 〉

- 공식 회의와 별개로 주요국 동향 파악 결과, 중국 및 일본 모두 비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으로 확인
  - (중국) 대상어선 1,300여 척(길이기준), ’20년 해사안전세미나 계획 중
  - (일본) 대상어선 530~700여 척(톤수기준), STCW-F\*와 시기를 맞추어 비준 검토
- \* STCW-F: 어선원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IUU 어업 근절을 위해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방안, 역량 개발, 대응 시스템 구축, 개도국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
-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세계수산대학\*을 포함한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 제기(FAO)

\* 해수부는 대한민국의 세계수산대학 유치 준비상황 발표 및 홍보영상 상영

**1-7****제17차 식량농업기구(FAO) 수산물교역위원회****I. 회의개요****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7차 식량농업기구(FAO) 수산물교역위원회  
(회의명 영문) The Seventeenth Session of Sub Committee on Fish Trade
- 기간/장소 : 2019. 11. 25.~29.(5일간) / 스페인 비고

**2. 참석규모**

- 참가자 : FAO 회원국 및 NGO, IGO 등 약 10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외교부 주라스팔마스 이창희 해양수산관 외 2명

기 관 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외교부	주라스팔마스 2등 서기관	이창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한덕훈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원태훈

**II. 회의결과****1. 수산·양식 개요 (Overview of the fisheries and aquaculture sectors)**

- 수산·양식 산업은 90년대부터 꾸준히 성장
  - 중국으로 인한 양식 부문 괄목한 성장
  - 미 70%와 아프리카 40%의 어류수입이 증가하며 교역 증가 추세
- 일부 회원국은 개도국 소규모 어민의 시장 접근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원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기술이 장벽으로 작용하면 안 됨을 강조
- 현재 아프리카 지역의 양식 어분 및 어유 수출이 증가하여 내륙국가의 식량 다양화로 이어짐

## 2. 국제 협력 (Global Themes and work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FAO의 청색성장 이니셔티브(Blue Growth Initiative)는 해양뿐 아니라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우르며, 다수의 관련 프로젝트 진행 중
  - \* 내수면 및 환경 등
- FAO는 국제식품규격(Codex Alimentarius) 위원회와는 식품 품질, ILO와는 사회적 책임, IMO와는 IUU어업 방지, OECD와는 농업전망, WTO와는 수산보조금 등에서 협력 중
- 회원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서 FAO의 기술자문 지원 지지하였으나 WTO 협상 지역에 아쉬움을 표시
  - 회원국은 모든 수산보조금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강조
- 국제관세기구(WCO)와 HS코드 협력 지속 권장

## 3. FAO 시장 및 교역 정보 (FAO information on markets and trade: GLOBEFISH and the FISH INFONetwork (FIN))

- 사무국은 처음으로 어류지표를 음식지표에 포함하여 통합
- HS코드에 대한 다수의 요청에 따라 작업 지속할 것이며, 코드 내용에는 큰 변화 없지만 보여지는 방식에 변화 줄 예정
- 회원국은 GLOBEFISH의 가격 데이터가 현실을 잘 반영하여 가격 조사 시 유용함을 칭찬
  - 하지만 FAO 웹사이트에서 찾기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개선 요청
- 최근 GLOBEFISH에 대한 사무국 및 회원국의 관심 저하에 대한 우려도 있었음

## 4. 수산물 품질 및 안전 (Quality and safety of fish and fishery products)

- FAO 사무국은 화학용품과 살충제 등 다양한 수입 금지 유형을 소개하고 위험기반접근 개선을 지원 중임을 설명
  - 수산물 품질 규제와 화학 잔여물 최대치 등에 관한 신규 규제 및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한 제3국을 지원
  - 과학적 조언과 정책 지침에 관하여 기타 UN기구 등 국제기구와 협력 중



- 회원국들의 수산물 안전을 위한 자국의 노력 발표가 이어졌으며,
  - 우리나라는 WHO 및 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성취한 해조류 국제 표준 도입을 홍보하고 조류 대증식(Algal bloom) 문제가 심각함을 소개
- 아프리카 등 지역별 표준 개발 필요를 강조하고, 지역 표준 개발에 FAO가 참여 및 지원해주기를 요청

## 5. 소규모 어업 (Small-scale fisheries: value chains, post-harvest operations and trade)

- FAO 사무국은 식량안보에서 소규모 어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관련 지침(The Voluntary Guidelines for Securing Sustainable Small-Scale Fisheries, SSF Guideline)을 개발
  -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SSF 업브렐라 프로그램 운영 중
- 2020년은 영세어업의 해이며, 2020년 FAO 수산위원회에서 의제로 다룰 예정
- 소규모 어민의 정책 참여와 국제 시장 접근이 어려우니, 정책입안 시 공동 관리와 더불어 소규모 어업의 복잡한 특성 고려 필요

## 6. 상품 적법성과 투명성 (Product legality and transparency from a trade perspective)

- FAO 사무국은 2017년 CDS 자발적 지침 (FAO Voluntary Guidelines for Catch Documentation Scheme) 채택 후 다수의 워크샵 개최를 통한 의식제고 노력 중
  - 미스라벨링(mis-labeling), 어종 바꾸기, 수질, 수산물 외관 속이기 등 다양한 어류 사기(fish fraud) 유형을 설명하고 관련 연구결과 발행 및 워크샵 개최 등 활동 소개
- EU 등 일부 회원국은 FAO 가이드라인 적용하여 관련 정책 시행하고 있으며,
  - 스위스 등 조업을 거의 하지 않는 내륙국가도 어류 수입국으로서 EU CDS 제도를 따라 시행 중
- 일부 회원국은 투명성과 적법성 확인을 위한 CDS 등의 조치가 거래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함을 강조
- 적법성 확인을 위한 PSMA 가입 및 이행의 중요성 역시 강조됨

## 7. 이력 추적제 (Traceability: FAO's recent work and the future)

- FAO 사무국은 수산물 이력 추적제에 관한 연구 및 보고서를 발행하고, 연안국, 기국, 항만국, 시장국의 CDS 역할을 연구 중
- 이와 함께 블록체인 적용을 통한 투명성 증가 및 부패 예방 가능성 검토 중
- 회원국들은 어획증명제도 전자화를 위해 협력 중이며, FAO의 지속적인 조언제공을 요청
- 기업들이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적용하기 힘들 수 있음을 지적

## 8. 생물다양성 보존과 교역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rade)

- 최근 관세 완전 철폐를 목표로 하는 다수의 무역협정이 체결되고 있으며, 사무국은 개도국이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려
- 수산보조금, IUU어업, 수산 및 양식과 어류 교역에 관한 조항이 다자협상에서 추가되는 추세
- 회원국은 지역무역협상 증가 추세를 환영하면서도 소규모 기업에 미칠 영향에 우려 표시
  - 환경 등에 관한 비전통적 조항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됨을 강조
  - 최신 무역협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원산지 규정 추가는 고무적

## 9. 양식 전달 (Communicating aquaculture to consumers and other stakeholders)

- 양식 소비량의 꾸준한 증가와 함께 양식물 교류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교역소위 사무국은 양식 소위원회와 함께 양식상품지침 개발을 위해 협력 중
- 현재 세계적으로 양식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가 심각하여 인식 개선이 시급
- 회원국들은 양식 성공사례 등 관련 소식을 더욱 광범위한 대중에게 알릴 필요와 정보의 과학적 기반 분석 중요성 강조



## 10.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in fish value chains)

- 사회적 책임 논의의 주체는 일반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이며, 본 주제를 위한 국제 도구는 이미 존재(ILO C188 등)
  - 사무국은 ILO C188에 가공선 등을 추가 적용하는 업무 진행 중
- 회원국은 ILO 등의 기타 기구와 관련 협력을 지지하나 FAO 주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강조
- FAO가 인권 전문 기구는 아니지만 수산관련 전문성 제공을 통한 인권 향상 기여 기대

## 11. 수산 서비스 교역 (Trade in Fisheries Services)

- 수산 공급사슬에서의 서비스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게 영향을 주며, 많은 전문가 협의 필요
- 현재 수산 서비스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이 분명치 않아 관련 분석이 필요함
- 현재 다자협정에서 수산 서비스 부문은 제외되는 모습을 보이므로 FAO가 이에 신경 써야 할 것
- 미국 등 국가는 수산 서비스 자체의 정의가 불분명함을 지적하며 이에 관련 통계와 데이터 수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
  - 통계에 특히 취약한 개도국에게 이러한 애매모호한 작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가며 FAO가 업무를 진행해야 함을 조언

## 12. 기타 (Any other matters)

- 우리나라는 세계수산대학의 설립 배경과 FAO와의 MOU 체결,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등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을 소위원회에 발표하였으며,
  - 쿠, 브라질, 세네갈, 감비아, 가나 등 회원국으로부터 지지발언을 받음

## 2-1

## 제12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23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위원회  
(회의명 영문) The 123rd Session of the Committee for Fisheries
- 기간/장소 : 2019. 4. 28.~30.(3일간)\* / OECD 본부, 프랑스 파리  
\* '19. 4. 28. 의장단 회의 / '19. 4. 29.~30. 123차 수산위원회

#### 2. 참석규모

- 참가자 : OECD 회원국 28여 개국(미국, EU, 일본, 호주, 노르웨이 등), 러시아, 대만, 아르헨티나, FAO 등 8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정책과장 외 2명

기관명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과장	조일환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조안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원태훈

### II. 회의결과

#### 1. FishPEM모델 발전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FishPEM 조사대상 지역을 2개로 확대하고, 정책 다양성 및 Input Control 추가를 제안하며 회원국의 의견 요청
- 회원국은 공해지역 포함, 모델의 명확성 유지 강조
- 우리나라는 2개 지역 교역에서 나타나는 영향 분석 제안



## 2. FSE 데이터베이스 개선

- FSE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질문지의 불명확함과 정책 분류의 어려움에 관한 지적이 지속되자 사무국은 정책 분류 범주를 축소 및 삭제하여 질문지를 간소화하고, 데이터 품질 확인 절차 개발을 제안
- 회원국은 사무국의 FSE 개선 방향에 지지를 보냈으며, 효과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사무국의 노력을 환영

## 3. 수산동향 보고서 (Review of Fisheries)

- 2020년 발간 예정인 수산동향 보고서 개선을 위해 사무국은 조사 종목 및 조사 국가 수 확대를 제안하고 회원국들의 자발적 기여금 제공 요청
- 데이터 제출 일정이 족박하여 일부 회원국들의 기한 연장 요청이 있었고, 호주 등 국가는 자발적 기여금 제공 의사 표시
  - 사무국은 보고서 발간 일자를 맞추기 위해서는 기한 연장이 어려움을 설명하며 회원국에게 양해를 구함

## 4. 청색경제에서 수산정책의 역할

- 사무국은 수산업에 집중하던 기존 수산위원회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 경제까지 확대 계획
  - 이에 따라 수산정책 외의 기타 정책들이 청색경제 목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제안
- 회원국은 레저 어업 등을 연구에 포함을 제안하였고, 미국 등 국가는 어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본 연구가 자국과 관련성이 떨어짐을 설명하며 모든 회원국의 현실을 반영하는 연구 요청

## 3-1

### 제12차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한 동북아 국가 협의회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2차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한 동북아 국가 협의회
- 기간/장소 : 2019. 8. 18.~19. / 일본 동경

##### 2. 참석규모

- 참가국 : 한국, 일본, 대만 정부대표 2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국제협력총괄과 이희연 사무관 외 3명

기 관 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희연
	국제협력총괄과 전문관	나일강
국립수산과학원	양식산업과 사무관	최상화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이혜나

#### II. 회의 내용

##### 1. 뱀장어 자원 보존을 위한 국가별 상황 점검 및 보존관리 조치 의논

- '18-'19 어기의 뱀장어 입식량, 생산량 및 수출입 통계 점검
  - 참가국별 극동산과 비극동산 뱀장어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각국의 통계량이 공동성명서 상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점검
- 뱀장어종 보존 관련 국가별 현황 점검
  - 참가국별 국내 법령, 제도 개선사항 발표 및 질의응답



■ (아국) 뱀장어 보존 관련 기준 제도(포획기간 및 체장 규제, 뱀장어 매매장소 제한 등)와 함께 '18년부터 새로 시행한 어도개발 사업 등 설명

- (포획 규제)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10.1.~이듬해 3.31.) 동안 포획 금지, 15cm~45cm의 뱀장어 포획 금지
- (뱀장어 매매장소 제한) 위판장 외 거래 금지 및 위반 시 벌칙(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완료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18. 7.)
- (어도개발) 실뱀장어 소상(바다에서 강으로 거슬러 올라감)이 제한된 지역에 전용 어도를 개발하여 내수면 뱀장어 자원량 증대 도모
  - \* '18년에 설치한 금강 하구둑 뱀장어 전용어도 모니터링 및 효과 분석 예정
- (허가제 전환) 뱀장어 양식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양식산업발전법을 제정 중에 있음

■ (일본) 양식 허가제 및 이력추적 개선 사업 실시

- (허가제) 내수면어업진흥법에 따라 뱀장어 양식업을 허가제로 전환, 개별 실뱀장어 쿼터를 할당하고 입식량 신고를 의무화
- (이력추적) 뱀장어 이력추적을 위해 '19년에 3개년 프로젝트 시작
- (포획규제) 지자체별 실뱀장어 채포기간(12월 초~4월 말), 성어 포획금지기간(10월~3월), 금지 체장(20~30cm 이하)을 정하여 규제

■ (대만) 포획 기간, 체장 규제, 양식 면허제 등 시행 중

- (포획규제) 실뱀장어 채포기간(11월~2월), 포획금지 체장(8cm 이상)을 정하고, 지정된 39개 하천에서는 연중 뱀장어 포획을 금지
- (면허제) '14년 이래로 면허제를 시행 중이며, 입식 후 10일 내 입식량 보고가 의무화
- 뱀장어종 보존관리조치 논의
  - 공동성명서('14.9.)와 동북아 지역 워크숍('18.9.)의 권고사항, CITES 제18차 당사국 회의 결정문(안) 등 검토

## 3-2

###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 총회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8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당사국 총회
- 기간/장소 : 2019. 8. 17.~28. / 스위스 제네바

### 2. 참석규모

- 참가국 : 183개 당사국 정부대표단, 관련 전문가, NGO 등
- 우리나라 대표단 : 환경부 자연보전국 이호중 국장 외 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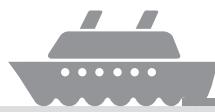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장	이호중
	생물다양성과 사무관	송인준
	생물다양성과 전문관	유지안
국립수산과학원	자원환경과 연구사	정민민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이혜나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임업연구사	전철현
	목재공학연구과 임업연구사	이현미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주무관	박예정
	생약연구과 보건연구사	김선화



## II. 회의 내용

### ■ 회귀 해양 생물자원 상태 및 보존관리

- 멸종위기에 근접한 뱀장어종, 희귀산호, 험프헤드레스, 상어 및 가오리, 대모와 기타 바다거북, 해마류 등의 자원상태 및 보존관리 조치 발표
  - (뱀장어종) 아국은 뱀장어 자원보존을 위해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동북아국가 협의회에 참여하여 A. japonica종의 보존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방안에 대한 지역적 차원의 논의를 하고 있음을 발언하였으며, 개별국가 차원에서도 보존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을 발언하였음.
  - (해마류) 아국은 자연산 해마류는 수출입하고 있지 않으며, 보호 중인 점을 발표하였음.



## 제2장 지역수산기구

1. 제7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36
2. 대서양다량어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42
3. 제27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연례회의	46
4. 제5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50
5. 제15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53
6. 제41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56
7. 제26차 남방참다량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	59
8. 제26차 대서양다량어보존위원회(ICCAT) 정기회의	63
9. 제16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70





# 1

## 제7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7차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7<sup>th</sup> Meeting of the Commission
- 일시/장소 : 2019. 1. 19.~27. / 네덜란드 해이그
- 의장 : Osvaldo Urrutia (칠레)

#### 2. 참석규모

- 참가국 : 15개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100여 명
  - \* 한국, 호주, 칠레, 중국, 쿠제도, 쿠바, 에콰도르, EU, 페로제도, 뉴질랜드, 페루, 러시아, 대만, 미국, 바누아투
- 우리나라 대표단 : 국제협력총괄과 박찬수 사무관 외 7명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박찬수
	국제협력총괄과 전문관	나일강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연구관	최석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주무관	최미영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2부 사원	최동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양재걸
인성실업	운항관리팀 차장	박강희
동원산업	해양수산2팀 대리	김영훈



## 이행위원회 주요 논의결과

### 1. 보존관리조치 이행평가

#### ■ 국별 주요 이행평가 결과

국 가	불이행 사항	논의 결과
에콰도르	전갱이 조업자료 사무국에 미제출	미평가
러시아	옵서버 보고자료 과학위 양식 미사용	이행
중국	IUU목록 선박에 항구서비스 제공	우선순위 불이행
쿡	IUU목록 선박에 항구서비스 제공	우선순위 불이행
뉴질랜드	조업 허가선박 사무국장 미통보	불이행
EU	바닷새 접촉 보고 누락	이행
파나마	IUU목록 선박에 항구서비스 제공	우선순위 불이행
	조업 허가선박 사무국장 미통보	불이행
한국	조업 허가선박 사무국장 미통보	불이행
	옵서버 전재 로그시트 미제출	불이행

### 2. 기존 및 신규 IUU 목록 등재 논의

#### ■ 신규 IUU 목록 등재 논의

선 명	기 국	사 유	논의 결과
ZHONG XIANG	라이베리아	협약수역 내 미허가 전재 활동	초안 삭제
HUA LI 18 NING TAI 11 MING XIANG 803	중국	미허가 선박(ZHONG XIANG) 전재	초안 삭제
AMALTAL APOLLO	뉴질랜드	조업금지 수역에서 저총트를 작업 14회 실시	잠정목록 삭제

### III. 총회 주요 논의 결과

#### 1. 2019년 전갱이 TAC 및 국별 쿼터 결정

- (총 TAC) 과학위 권고에 따라 2019년 TAC를 전년비 3% 증가 결정
    - 2018년 57.6만 톤 → 2019년 59.1만 톤
  - (한국 쿼터) 2017년 연례회의 시 결정된 국가별 할당비율\*에 따라 우리 측 쿼터 결정(전년비 3% 증가)
    - 2018년 7,385톤 → 2019년 7,578톤
- \* 칠레 64%, EU 6%, 중국 6%, 한국 1.28% 등
- FAO의 청색성장 이니셔티브(Blue Growth Initiative)는 해양뿐 아니라 물과 관련된 모든 것\*을 아우르며, 다수의 관련 프로젝트 진행 중

#### 2. 주요 보존관리조치 제안서 논의

- 기존 보존관리조치 논의

제안서명 (제출)	주요 내용	논의 결과
전갱이 (바누아투)	• '23년부터 과학위 권고로 TAC 증가할 경우, 직전 2개년 쿼터사용 (이전 포함) 비율 60% 미만인 국가는 추가쿼터 미배분	철회
전갱이 (에콰도르)	• 에콰도르 EEZ를 협약수역 내로 편입시켜 페루 · 에콰도르 EEZ에 분포하는 자원 6만 톤 중 1.1만 톤을 에콰도르에 할당	철회
옵서버 프로그램 (총회 의장)	• 커버리지 미설정 어업의 경우 다음 과학위에서 적절한 커버리지 수준 제시 • 국내 옵서버 프로그램 승인 시, 타 RFMO에서의 승인 여부 고려	채택
저층어업 (호주, 뉴질랜드)	• 일정 중량의 VME 접촉 있으면 해당 지점의 반경 1해리 내에서 조업 중단 • 시험어업 및 심해어종은 본 조치 미적용	채택
선박 목록 (뉴질랜드)	• 협약수역 '첫 진입' 의미 명확화 • 기국변경 시 사무국이 이전 기국에 통보 • 100톤 이하 선박도 IMO번호 등록 의무	채택



이행감시체제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행보고서 보고범위 변경 (11.1.-10.31. → 10.1.-9.31.) 사무국 업무부담 경감</li> </ul>	채택
항구 검색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법어업 선박에 항구서비스 제공 금지</li> <li>최소 검색비율 5%</li> </ul>	채택
전재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약수역 외의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전재(SPRFMO 지원)도 규율</li> </ul>	미채택

### ■ 신규 보존관리조치 논의

제안서명 (제출)	주요 내용	논의 결과
오렌지 러피 (호주,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호주, 뉴질랜드 인접 4개 수역 오렌지러피 할당</li> <li>공해 경계왕래어종은 특정지역에서 특정국가에 100% 할당은 불가</li> </ul>	채택
이빨고기 시험조업 (뉴질랜드,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뉴질랜드) 140톤, 공동 과학조사, CDS 발급</li> <li>(EU) 45톤, CCAMLR 조치 도입, 혼획 규정</li> </ul>	채택
통발 시험조업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랩스터 · 게 (1차년: 600톤, 2차년: 300톤)</li> <li>과학위 권고를 토대로 다음 연례회의에서 재개 여부 결정</li> </ul>	채택
해양오염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구 투기 행위 금지, 분실 시 회수 노력</li> <li>플라스틱 등 선상 쓰레기 투기 금지</li> </ul>	채택
연구촉진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태계 영향이 적은 과학조사 활동 활성화</li> </ul>	철회

IV.

## 제 · 개정 보존관리조치 목록

제안서명 (제출)	보존관리조치 제목
01-2019	전갱이 ( <i>Trachurus murphyi</i> )
03-2019	SPRFMO 협약수역 내 저층어업 (Bottom Fishing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03a-2019	SPRFMO 협약수역 내 심해어종 (Deepwater Species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04-2019	SPRFMO 협약수역 내 IUU어업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목록의 수립 (Establishing a List of Vessels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UU Fishing Activities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05-2019	SPRFMO 협약수역 내 조업허가 선박목록의 수립 (Establishment of the Commission Record of Vessels Authorized to Fish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07-2019	항구검색 최소기준 (Minimum Standards of Inspection in Port)
08-2019	SPRFMO 협약수역 내 자망 (Gillnets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10-2019	SPRFMO 협약수역 내 이행감시체제의 수립 (Establishment of a Compliance and Monitoring Scheme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13-2019	SPRFMO 협약수역 내 새로운 시험어업의 관리 (Management of New and Exploratory Fisheries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14a-2019	SPRFMO 협약수역 내 뉴질랜드 선박의 이빨고기 시험어업 (Exploratory Fishing for Toothfish by New Zealand-Flagged Vessels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14b–2019	SPRFMO 협약수역 내 통발 시험어업 (Exploratory Potting Fishery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14c–2019	SPRFMO 협약수역 내 EU 선박의 이빨고기 시험어업 (Exploratory Fishing for Toothfish by EU Vessels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16–2019	SPRFMO 옵서버 프로그램 (The SPRFMO Observer Programme)
17–2019	SPRFMO 협약수역 내 어구 및 해양오염 (Fishing Gear and Marine Plastic Pollution in the SPRFMO Convention Area)

# 2

## 대서양다량어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대서양다량어보존위원회(ICCAT) 패널2 회기간 회의  
(회의명 영문) Intersessional meeting of Panel 2
- 일시/장소 : 2019. 3. 4.~7. / 스페인 마드리드
- 의장 : Ota Shingo (일본)

#### 2. 참석규모

- 참가국 : 14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등 약 100여 명
  - \* 한국, 미국, 일본, 캐나다, 모로코, 중국, 리비아, EU, 튜니지, 알제리, 터키, 노르웨이, 이집트, 알바니아
- 우리나라 대표단 : 국제협력총괄과 박찬수 사무관 외 2명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박찬수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양재걸
시조산업	참치사업부 수선팀 대리	김덕림

### II. 회의결과

#### 1. 회의결과

##### ■ 적용될 보존관리조치 결정

- 작년 채택된 18-02가 '19.6.21.부터 발효하여 일부 회원국의 경우, 여기 시작에는 17-07이 적용되고, 완료 시점에서는 18-02가 적용
- 18-02의 모든 조치를 적용한다는 전제하에, 일괄적으로 18-02를 조기 적용하기로 결정



### ■ 회원국 조업계획서 주요 지적사항

- 2020년 계획은 승인 대상 아니므로 삭제
- 부수어획 쿼터는 할당된 쿼터와 분리하여 기재
- 죽은 어류 폐기는 쿼터에서 차감

### ■ 한국 조업계획서 지적사항

국가	내용	조치
미국	VMS 보고주기 및 옵서버 승선율 수치 명시	2시간, 25% 이상으로 명시
미국	조업해역 좌표 표기	서경10도 이서, 북위42도 이북으로 표기
중국	흔획 쿼터, 할당된 쿼터와 분리하여 기재	0.5톤 분리하여 기재 (조정쿼터 233.5톤)

## 2. 보존관리조치 18-02 해석

조항	조항 내용	질의 내용	의견 및 결론
30	기상 상황으로 인한 어기 연장 허용 (최대 10일)	(리비아) 회원국이 재량으로 판단하는가? 통보절차는 무엇인가?	Beaufort scale 4 이상일 경우 허용 (회원국이 판단), JFO의 경우와 같이 중단했음을 증명해야 함
42	스포츠 및 레저 어획 데이터의 제출 기한 (7/1)	(사무국) 다른 데이터의 제출 기한 (7/31)과 달라야 하는 이유?	다른 기한과 동일하게 7/31로 수정함 (11월 회의에서 誤字 채택)
45	'어획 후 방류' 스포츠 선박 및 과학 선박 통제	(노르웨이) 이를 위한 명시적 쿼터를 설정하도록 해야 함	쿼터 설정은 자유, 조업계획서에 명시하여 승인받아야 함
50	조업선박 목록 제출 (활동 시작 15일 전)	(사무국) 기타 선박(보조선 등)에 관해서는 미규정	비의도적으로 누락됨. 기타 선박에도 적용되고, 2019년에는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이행
51	등록선박 목록 추후변경	(리비아) 기타 선박도 적용대상인가? 어기 끝난 선망선을 보조선으로 등록하여 사용 가능한가?	그러함. 조업허가 철회 및 어구 내린 후에만 보조선 등록 가능

65	조업선의 일일 어획보고	(노르웨이) 선박이 항구에 있어 무조업의 경우에도 보고해야 하는가?	(결론) 항구에 있으면 무보고 (EU) JFO는 보고해야 함
74	사무국이 주간 어획보고를 취합하여 회람	(사무국) 보고대상, 회람대상 및 일자가 불분명	다음 개정 시 수정되어야, 당분간 주간 어획보고의 연간 누계를 웹사이트에 게시함(익월 10일)
84	ICCAT 지역옴сер버의 선정 요소 (국적, 언어)	(사무국) 부속서6은 84항과는 달리 언어를 강조하는 것으로 오해 가능	다음 개정 시 수정되어야, 상이한 국적이 언어보다 우선 터키는 올해 예외적으로 자국인 사용 가능
92	가두리 직업 중 자발적인 이전 및 통제이전 시 이전 양의 추정을 위한 비디오 기록의 지역옴서버 및 국내옴서버에게 전달	(터키) 통제이전 시 지역옴서버는 근처에 없으므로 국내옴서버에게 비디오를 전달하고, 후에 지역옴서버에게 전달하도록 해야 함	(EU, 터키) 통제이전 시 국내옴서버가 관찰하도록 함. 해석의 하나임  (의장) 문언적으로 불가능한 해석이므로 수용 불가능  (결론) 현 문구 그대로 사용. 지역옴서버가 근처에 없다면 컨소시엄을 통해 비디오를 전달하고, 지역옴서버가 이를 확인할 의무는 없음
92	이전 양이 추정 가능할 때까지 이전작업 실시	(터키) 오류로 판단됨	(결론) 오류, 수정되어야 함 (미국) 새로운 이전→통제 이전



### 3. 관리전략평가

#### ■ 결의 18-03 제2항에서 제시된 4가지 관리목표의 문구 결정

- 자원 상태

- Kobe plot의 녹색 영역에 위치할 가능성이 60%보다 커야 한다.
- SCRS는 관리자들이 0에서 30년 사이 중간지점의 자원상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궤적의 형태로 표시된 구획표의 형태로 제시할 것이다.
- 성과지표들은 이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

- 안전성

- 30년의 평가기간 중 어느 시점에서도 자원량이 BLIM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15%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 BLIM은 SCRS에 의해서 결정된다.

- 산출량

- 단기, 중기, 장기의 평균어획을 극대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평가한다.
- 성과지표들은 이것을 반영하기 위해 수정된다.

- 안전성

- 관리기간의 사이, TAC를 20%, 30%, 40% 그리고 무제한으로 변화시켰을 경우의 결과를 평가한다.

#### ■ 향후 MSE 일정

- 2019년 11월(정기회의)까지 초기 단계 작업 목표 마련

- 이후 다음 단계까지 피드백을 동반한, 최소 4번의 회의가 필요

- 2020년 7월 참다랑어 MSE 작업반에서 관리자-과학자 간 대화 증진 회의 → 이 회의에서 MSE 일정 연기 여부 결정

\* MSE 일정이 연기되면 2021년 이후 TAC를 위한 자원평가 시행

# 3

## 제27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연례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7차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NPAF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27<sup>th</sup> Annual Meeting of the Commission
- 일시/장소 : 2019. 5. 12.~17. / 미국 포틀랜드

#### 2. 참석규모

- 참가국 : 5개 회원국\* 대표 및 읍서버 등 약 100명
  - \* 한국, 미국, 캐나다, 러시아, 일본
- 우리나라 대표단 : 국제협력총괄과 이희연 사무관 외 9명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희연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 팀장	윤성민
울산광역시	울주군 태화강 생태관 연구원	김나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내수면연구센터 책임연구원	김주경
	내수면연구센터 주임연구원	이수경
	생명자원실 주임연구원	김은아
부경대학교	자원생물학과 교수	김수암
	자원생물학과 연구원	이화현
Big River Scientific LLC	프로젝트 매니저	윤상선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양재걸



## II. 회의결과

### 1. 감시위원회(ENFO) 주요 논의 결과

- '18년 감시활동 및 '19년 감시계획 보고

회원국	주요 내용
러시아	• 항공정찰 39회. 사할린 국경경비대–일본 해안경비대 간 정보교류
캐나다	• 27년 만에 항공정찰 미실시. 456회 위성촬영. 올해 사기업과 서비스 계약이행
일본	• 해안경비대 및 수산청 항공기(2대, 3–12월, 159시간) 정찰. 이메일 회의 참여
한국	• 해군 함정에 의한 3차례(3, 6, 9월) 감시활동. 올해는 11–12월경 실시 계획
미국	• 5–8월, Operation North Pacific Guard - Alex Haley호, 승선검색 6회 실시 → 불법 유자방 조업하던 Runda호(중국) 나포 (연어 80톤 보유) • 올해 6–9월 감시활동 계획. WCPFC, NPFC 승선검색도 실시 • 중국 해양경찰 ship rider 프로그램 지원

- NPAFC IUU 선박목록 수립
  - 미국이 제안서 준비하여 사무국에 제출
- 차기 연례회의 전 ENFO 워크샵 개최
  - 내년 워크샵 주제는 ‘전재와 IUU’. 각국에서 발표자 추천
- 새로운 ENFO 커뮤니케이션 도구
  - 미국이 새로운 APAN 시스템 수립 위한 제안서를 사무국에 제출
- 격주간 이메일 회의
  - 각국은 유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고, 미국이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지하기로 합의(미국 대신 사무국이 조정자 역할)
- 연어 혼획 통제 위한 NPFC와의 협력
  - 검색관에 의한 검색 · 보고를 포함하여 NPFC 회원국이 연어 혼획 통제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기로 함(ENFO 의장과 NPFC TCC 의장 간 협의)

## 2. 과학위원회(CSRS) 주요 논의 결과

- '18년 국가별 어획 · 방류량

구 분	러시아	미 국	일 본	캐나다	한 국	합 계
어획량 (톤) (비중)	67만6201 (63.36%)	28만6841 (26.88%)	9만1314 (8.56%)	1만2609 (1.18%)	240 (0.02%)	106만7205 (100%)
방류량 (마리 수) (비중)	8억4230만 (17.16%)	21억4685만 (43.73%)	16억4806만 (33.57%)	2억6173만 (5.33%)	1071만 (0.22%)	49억964만 (100%)

- '09년부터 총어획량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역사적으로 높은 수치
- 전통적으로 흘수 해의 어획량이 짹수 해에 비해 높으나, '18년은 짹수 해임에도 높은 어획량을 기록 (짜수 해 최고 어획량)
- 곱사연어(55%), 연어(26%), 흉연어(16%), 은연어(2%), 기타(1% 미만)
- 곰사연어의 대부분은 러시아에 의해 어획 (59만2,100톤, 86%)
- 연어(chum)는 27만2,500톤으로, 러시아가 41%, 일본이 29% 어획
- 아시아 국가 총어획량 및 곰사연어 총어획량은 '10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연도별 어획량 변동은 곰사연어 어획량 변동으로 인함. 곰사연어 어획량의 저조(7만1,300톤)로 '18년 북아메리카 연어 어획량은 '78년 이후 최저치 기록
- 방류량은 예년 50억 톤을 기록했으나, '18년에는 다소 저조한 49억 톤 기록



### 3. 재정행정위원회(F&A) 주요 논의 결과

- 분담금 인상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YS 등 특별사업으로 인한 예산 소모로 10여 년 만에 분담금 인상 논의</li> <li>• 점진적인 인상 vs. 대폭적인 인상 및 인상 시기 (20/21 vs. 21/22) 결정</li> </ul>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러시아) 물가상승률 반영은 가능. 급격한 인상은 불가능. 20/21부터 실시 가능</li> <li>• (캐나다) 기구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으므로, 20/21부터 2%씩 인상이 바람직</li> <li>• (일본) 고정하였다가 한 번에 인상하는 것을 선호, (내년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21/22부터 인상 가능. (실시 시기를 일본만 늦게 적용하여) 특정 연도에 일본만 많이 내는 것은 협약 위반이므로 수용불가</li> <li>• (한국) 물가상승률만큼의 인상은 수용. 2021년부터 반영 가능</li> <li>• (미국) 예산조정은 보다 빈번히 이루어져야. 특별사업은 별도의 기여로 충당</li> </ul>
결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22 회계연도부터 캐나다 물가상승률(<math>\approx 2\%</math>) 만큼 분담금 인상</li> <li>• 언제까지 인상할 것인가는 내년에 논의</li> </ul>

# 4

## 제5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5차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5<sup>th</sup> Annual Meeting of the Commission
- 기간/장소 : 2019. 7. 11.~18. / 일본 동경

#### 2. 참석규모

- 참가국 : 8개 회원국\* 대표 및 읍서버 등 100여 명  
\* 한국, 대만, 러시아, 미국, 바누아투, 일본, 중국, 캐나다
- 우리나라 대표단 : 국제협력총괄과 이희연 사무관 외 6명

기 관 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이희연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연구관	최석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사무관	김수훈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본부장	최경삼
	내수면연구센터 주임연구원	조성주
공치봉수망어업위원회	위원장	홍일섭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이혜나

### II. 회의 내용

#### 1. 기술이행위원회 (TCC)

##### ■ IUU 선박목록 개정

- 일본에서 중국 국적선박 6척의 추가등재를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4척만이 IUU 선박 목록에 추가됨



- 미등재 2척은 선명이 동일하여 이 중 1척이 선명을 불법도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중국 정부가 우선 조사 후 처리하기로 결정
- 상기의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NPFC 차원의 해결책을 회기 중에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

#### ■ 협약수역 내 모니터링 수단으로서의 AIS 사용 검토

- 일본에서 중국 국적선박 6척의 추가등재를 요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4척만이 IUU 선박 목록에 추가됨

\*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자동식별시스템 : 주로 해상에서의 선박 간 충돌방지 목적으로 활용되며, 선박의 위치, 속도 등의 항해 정보를 발신하는 장치

- NPFC의 옵서버인 Global Fishing Watch(비정부기구)가 AIS를 활용하여 북태평양에서의 회원국 조업활동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고, 사무국은 각 회원국에 VMS와 함께 AIS를 활용할 것을 권장

\* 비허가 조업선과의 접촉 및 소규모 항구에서의 하역 등

## 2. 총회

#### ■ 고등어 보존관리조치 개정(제안국 : 일본)

- 고등어 자원평가 완료 전까지 협약수역과 자국수역 내 어획량의 증가를 지양하는 내용의 제안서 제출
- 자국수역 내 과도한 제한에 회원국들이 우려를 표하여, 협약수역 내 고등어 어획량 증가를 지양하는 내용으로 수정·채택

#### ■ 꽁치 보존관리조치 개정(제안국 : 일본)

- 자원평가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일본이 꽁치 TAC 설정 제안서를 제출했으나, 제안된 TAC 수치와 쿼터 소진방식의 합리성이 부족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조업국들이 반대



### 제 · 개정 보존관리조치 목록

번호	보존관리조치 제목
01–2019	선박등록에 필요한 정보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on information requirements for vessel registration)
02–2019	협약수역에서의 IUU 어업 가담 선박 목록 수립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to establish a list of vessels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ctivities in the convention area of the north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05–2019	북서태평양 저층어업 및 바다 자원 보존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bottom fisheries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marine ecosystems in the northwestern pacific ocean)
06–2019	북동태평양 저층어업 및 바다 자원 보존을 위한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bottom fisheries and protection of vulnerable marine ecosystems in the northeastern pacific ocean)
07–2019	고등어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Chub Mackerel)
08–2019	꽁치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Pacific Sauries)
10–2019	은대구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Sablefish)
11–2019	정어리 및 살오징어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Japanese Sardine and Japanese Flying Squid)
12–2019	VMS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on the vessel monitoring system (VMS))
13–2019	컴플라이언스 모니터링 절차 보존관리조치 (CMM for compliance monitoring scheme)

**5**

## 제15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5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북방위원회  
(회의명 영문) 15<sup>th</sup> Regular Session of the Northern Committee
- 기간/장소 : 2019. 9. 2.~6.(5일간) / 미국 포틀랜드

#### 2. 참석규모

- 참가자 : 북방위원회(NC) 회원국\* 및 비회원국\*\*, NGO 등 약 100여 명
  -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대만, 캐나다, 필리핀, 쿠, 바누아투
  - \*\* 멕시코, 키리바시, 나우루, 팔라우, 통가, 파푸아뉴기니
- 우리나라 대표단 : 국제협력총괄과 김승룡 사무관 외 2명

기관명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김승룡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지원과 초빙연구원	김장근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원태훈

## II. 회의결과

### 1.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증명제도 기술회의

- 전자식 태평양 참다랑어 CDS(ePBCD) 개발에는 1) ICCAT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와 쓰는 방식과, 2) ICCAT 시스템을 토대로 개발, 또는 3)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3가지 옵션 존재
  - 개발 방식에 관하여 제16차 WCPFC 연례회의에 분석요청 예정
  - 종이 PBCD 사용은 전자시스템 고장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 비용은 WCPFC와 IATTC 회원국들이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을 토대로 공동 부담

### 2. 태평양 참다랑어 쿼터 논의

- 태평양 참다랑어 회복계획 달성을 가능성이 높은 수치를 보임에 따라 일본과 한국은 각각 참다랑어 쿼터 증가 제안
  - 이에 미국은 쿼터 증가는 2020년 벤치마크 평가가 완료된 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조심스러운 접근 주장
- 미국의 계속된 반대로 참다랑어 쿼터 증가는 무산
  - 일본은 2020년 대만으로부터 300톤의 대형어 쿼터를 이전

### 3. 북방 날개다랑어 논의

- 우리나라는 기술이행위원회에서 북방 날개다랑어 어업 노력량이 2002–2004년 평균 수준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보존관리조치(CMM 2005–03) 규정 위반 지적에 대하여 한국의 모든 2018년 북방 날개다랑어 어획량은 부수어획임을 해명
  - 미국이 부수어획을 모두 보고한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북방 날개다랑어 데이터를 모두 사무국에 전달했음을 설명하고,
  - 현재 동 보존관리조치에는 동 어종 보고에 대한 목표조업 어획량과 부수어획량의 차이를 구분할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 관리 수역이 남위 20도 이남인 남방 날개다랑어와 달리 북방 날개다랑어의 관리 수역은 적도 이북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시정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

#### 4. 새치류 논의

- ISC가 실시한 청새치 벤치마크 평가에 따르면 청새치는 현재 남획되고 있는 상태
  - 이에 미국은 청새치 자원회복을 위해 처녀 산란 자원량의 20%를 회복목표로 설정하기를 제안
  - 본 논의는 제16차 WCPFC 연례회의에 제안되어 지속될 예정

#### 5. 정족수 논의

- 제15차 북방위원회에는 중국, 피지, 필리핀, 바누아투가 참석하지 않아 정족수를 채우지 못함
  - 이에 미국은 북방위원회의 작은 규모를 고려하여 정족수를 북방위원회 회원국의 2/3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일본의 반대로 무산
  - 제15차 북방위원회는 올해 12월 제16차 WCPFC 연례회의에서 정족수를 총족한 후 이어가기로 결정

# 6

## 제41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41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41<sup>st</sup> Annual Meeting of the Commission
- 기간/장소 : 2019. 9. 23.~27. / 프랑스 보르도

#### 2. 참석규모

- 참가국 : 12개국
  - \* 한국, 일본, 미국, 캐나다, EU, 노르웨이, 프랑스, 러시아, 미국, 아이슬란드, 우크라이나, 쿠바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외수산협력센터, 한국원양산업협회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이혜나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1부 사원	최동환

### II. 회의 내용

#### 1. 2020년 우리나라 쿼터

- 전년 대비

\* 적어 톤 (소해역 3M: 69톤, 소해역 3O: 100톤), 오징어 453톤

〈연도별 우리나라 쿼터〉

연도	총쿼터 (톤)	어종별 쿼터 (톤)
'13	718	새우 96, 오징어 453, 적어 169
'14	670	새우 48, 오징어 453, 적어 169
'15~'18	622	새우 0, 오징어 453, 적어 169
'19	622	새우 0, 오징어 453, 적어 169
'20	622	새우 0, 오징어 453, 적어 169



## 2. 수역 및 어종별 TAC

- 수산위원회는 과학이사회 권고를 바탕으로 수역별 어종에 대한 TAC 확정

〈 어종별 TAC 논의 결과 〉

수역별 어종	TAC	논의 결과
3M Cod	8,531	• 최초 TAC 권고는 5,619톤과 10,879톤이었으나 자원의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해 8,531톤으로 합의되었음
3M 적어	8,590	• 2020년도 TAC 8,590톤, 2021년도 8,448톤(↓ 142톤)에 합의되었음
3M 새우	0	• 기존 모라토리엄 유지를 하나, 자원회복 추세가 뚜렷하기에 2021년부터의 조업 가능 여부 논의 예정
3O 적어	20,000	• '19년도 TAC('15~'19년) 20,000톤을 2020, 2021, 2022년에 유지
3LNO 각시 가지미	17,000	• '19년도 TAC 17,000톤을 2020, 2021년에 유지
3NO 기름 가지미	1,175	• '19년도 TAC 1,175톤을 2020, 2021년에 유지
3L 기름 가지미	0	• 2020, 2021, 2020년도 모라토리움 유지
중해역 3,4 오징어	34,000	• '19년도 TAC 34,000톤을 2020, 2021, 2022년에 유지
중해역 2,3KLMNO 오가자미	12,542	• 어획통제규칙(HCR)에 따라 과학이사회가 산정한 TAC 권고량 수렴
3LNO 새우	0 (-)	• 과학이사회 권고에 따라 기존 모라토리엄 유지
3O 적어	20,000	• 2020, 2021, 2022년도 TAC 20,000톤 유지

III.

### 제 · 개정 보존관리조치 목록

번호	보존관리조치 제목
1조	정의 (Definitions)
5조	어획노력 한도 (Catch and Effort Limitations)
6조	부속서 I.A에 기재된 목록의 어류종에 대한 어획이 금지된 상황에서 해당 어류의 부수어획으로써 선상에서 보관 (Bycatch Retention on Board of Stocks Identified in Annex I.A as Bycatch When No Directed Fishery is Permitted)
10조	그린랜드 넙치 (Greenland Halibut)
12조	상어 보존관리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harks)
13조	어구 요건 (Gear Requirements)
25조	선박 요건 (Vessel Requirements)
28조	어획물 모니터링 (Monitoring of Catch)
30조	옵서버 프로그램 (Observer Program)
32조	고지에 대한 사항 (Notification Requirements)
33조	감시 절차 (Surveillance Procedures)
36조	검색 보고 및 후속조치 (Inspection Report and Follow-up)
37조	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 절차 (Procedures Relating to Infringements)
38조	심각한 위반 사항에 대한 추가 절차 (Additional Procedures for Serious Infringements)
39조	위반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Follow-up to Infringements)
43조	항만국인 체약국의 의무 (Duties of the Port State Contracting Party)
44조	기국인 체약국의 의무 (Duties of the Flag State Contracting Party)
46조	사무국장의 의무 (Duties of the Executive Secretary)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6차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26<sup>th</sup> Annual Meeting of the CCSBT
- 일시/장소 : 2019. 10. 9.~17.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아프타운

### 2. 참석규모

- 참가자 : 8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50여 명  
\* 일본, 호주, 뉴질랜드, 한국, 대만, 인도네시아, EU, 남아공
- 우리나라 대표단 : 국제협력총괄과 박서영 사무관 외 6명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박서영
	국제협력총괄과 전문관	나일강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주무관	김보미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1부 대리	최봉준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김아영
동원산업	해양수산1팀 과장	황정훈
사조산업	수산1팀 사원	조찬원

## II. 회의결과

### 1. 회원국 이행사항 검토

- (어획증명서 제출 누락) 한국은 제출해야 할 어획증명서 수입문서 사본(어획 모니터링 서식, 재수출 또는 국내제품 양류 후 수출 서식) 일부를 사무국에 지속 미제출('10~'18년)
  - (발언 및 대응 내용) 수입수산물 자료 제공 관련 식약처-수품원 협조체계를 재점검하여 제출 누락된 어획증명서 사본 사후 제출 추진하고, 수품원에 수입요건 확인 신청을 한 후 수입요건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산물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안내 철저

### 2. 미소진 쿼터 이월에 관한 결의 개정안

- (논의 배경) 미소진 쿼터 산정 및 이월량을 결정함에 있어 일부 국가에서 남방참다랑어 상업적 조업량만 반영하고 있어 기타 사망량\* 반영 필요
  - \* 상업적 어획량을 제외한 폐기방류량, 유어어업 어획량, 전통어업 및 비상업적생계형 어업 어획량 등
- (주요내용) ‘미소진 쿼터 이월에 관한 결의’에 다음 조항 신설

자국 쿼터 미소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국은 쿼터에서 차감되는 SBT 총사망량과 자국의 총 어획 가능량을 비교해야 한다. 쿼터에서 차감되는 SBT 총사망량은 1) 상업적 조업량과 2) 폐기 및/또는 방류, 유어어업 어획량, 전통어업 및 비상업적 생계형 어업 어획량 등을 위해 각국이 별도로 설정한 유보량을 포함해야 한다.

- (발언 및 대응 내용) 우리나라에는 미소진 쿼터 산정 및 이월량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개정안 내용과 같이 이행하고 있고, 국별 쿼터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동 제안 지지

### 3. (어획증명제도) 미합의된 쟁점사항\*에 대해 차기 회의에서 계속 논의하되, 이행위에 앞서 회기간 중 중점 검토하기로 합의

- \* 1) 정확한 어획량 측정을 위해 어획증명서(CDS) 발급 시점을 양류 전에서 양류 후로 변경,
  - 2) CDS 승인권자 요건 강화(남방참다랑어와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인 배제)



#### 4. (생태계 관련종 부수어획 저감) 협약수역이 중첩되는 다른 RFMO(ICCAT, IOTC, WCPFC)의 관련 보존관리조치를 CCSBT에도 적용 합의

#### 5. 총허용어획량(TAC) 및 국가별 조업쿼터) 제23차 연례회의('16.10., 대만)에서 결정된 3개년도('18~'20년) TAC 및 국가별 어획 할당량 검토 및 확정

- ('20년도 TAC 결정) '16년도에 결정된 TAC 변경 여부 검토
- 예외적 상황(과학위 자원평가 결과, 자원 상태가 예측된 범위를 크게 벗어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MP에 의해 산출된 TAC를 비상규칙(Meta rule)에 의거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19년 과학위에 따르면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20년에 대하여 기존에 합의된 TAC를 변경해야 할 필요성 없음
- 따라서, 이번 연례회의에서는 불가피한 상황(회원국 신규 가입 요청, 과학위가 추정한 것 이상의 IUU 어획물량 발견 등)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추가적인 쿼터 할당 논의는 없었음

〈 '18~'20년도 TAC 및 국가별 어획 할당량 〉

(단위 : 톤, %)

국가명	'18~'20년 명목쿼터	'18~'20년 실질쿼터*	비율
일 본	6,165	6,117	35.6
호 주	6,165	6,165	35.6
뉴질랜드	1,088	1,088	6.3
한 국	1,240.5	1,240.5	7.2
대 만	1,240.5	1,240.5	7.2
인도네시아	1,002	1,023	5.8
EU	11	11	0.1 미만
남 아 공	423	450	2.4
연구조사용	6	6	—
비회원국용	306	306	—
합 계	17,647	17,647	100

\* '16년도 연례회의에서 3년간('18~'20) 일본 측 쿼터 가운데 48톤을 각각 남아공(27톤)과 인도네시아(21톤)로 이전하기로 합의

### III. 제 · 개정 보존관리조치 목록

번호	보존관리조치 제목
	CCSBT 어획증명제도 시행에 관한 결의 (Resolu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 CCSBT Catch Documentation Scheme)
	남방참다랑어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목록의 수립에 관한 결의 (Resolution on Establishing a List of Vessels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ctivities For Southern Bluefin Tuna)
	CCSBT의 생태학적 관련종에 관한 조치를 다른 다량어 RFMO의 조치와 조화시키기 위한 결의 (Resolution to Align CCSBT's Ecologically Related Species measures with those of other tuna RFMO's)
	남방참다랑어 조업의 생태학적 관련종에 대한 영향을 경감시키기 위한 권고 (Recommendation to Mitigate the Impact on Ecologically Related Species of Fishing for Southern Bluefin Tuna)
	남방참다랑어 조업허가 선박목록에 관한 결의 (Resolution on a CCSBT Record of Vessels Authorised to Fish for Southern Bluefin Tuna)
	관리절차의 채택에 관한 결의 (Resolution on the Adoption of a Management Procedure)
	남방참다랑어 미소진 연간 총허용어획량의 제한된 이월에 관한 결의 (Resolution on Limited Carry-forward of Unfished Annual Total Allowable Catch of Southern Bluefin Tuna)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6차 대서양다량어보존위원회(ICCAT) 정기회의  
(회의명 영문) 26<sup>th</sup> Regular Meeting of the Commission
- 일시/장소 : 2019. 11. 16.~25. / 스페인 팔마 데 마요르카

### 2. 참석규모

- 참가자 : 58개 회원국 대표 및 옵서버 등 약 650명
- 우리나라 대표단 : 국제협력총괄과 박서영 사무관 외 3명

기 관 명	부서 및 직위	성 명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사무관	박서영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1부 사원	백상진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양재걸
사조산업	수산1팀 대리	이민성

## II. 회의결과

### 1. 열대다량어 권고 채택

- TAC : (2020년) 62,500톤 (2021년) 61,500톤
- 어획한도 (\*최근 평균어획량 : '13-'17년 평균어획량)

구 분	대 상	CPC	2020년 잠정 조치
(a)	기존 권고 어획한도 10,000톤 초과	일본, EU, 대만	기존 어획한도에서 21% 감축
(b)	(a)에 미해당, 최근 평균 어획량 * 3,500톤 초과	브라질, 중국, 가나	최근 평균어획량 또는 기존 어획한도에서 17% 감축
(c)	최근 평균어획량 1,000톤~3,500톤	퀴라소, 카보 베르데 등 7개	최근 평균어획량에서 10% 감축
(d)	최근 평균어획량 1,000톤 미만	미국, 한국 등 나머지 29개	최근 수준으로 어획량 · 노력 유지 장려

- 2020년 이후 조치 및 CPC별 어획한도는 내년 회기간 회의에서 논의
- 쿼터 이전
  - (CPC 간 전배)
    - 기존 권고 일반조항(어획한도 15%까지 허용) 삭제
    - 개별적 허용 : 한국–대만(223톤), 일본–중국(600톤), 일본–EU(300톤)
  - \* 5bis Korea may transfer 223t of its bigeye tuna fishing possibilities to Chinese Taipei in 2020. (2020년에 한국은 눈다량어 조업가능성 223톤을 대만에 전배할 수 있다.)
- (쿼터 이월)
  - '19년 미소진 쿼터는 '21년 쿼터에 CPC 어획한도의 10%까지 추가 가능
  - (기존 권고 쿼터표 내 7개 CPC만 해당)



### ■ 어획보고 (→ 보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사무국으로)

- (선망 · 연승\*) 월간보고, 어획한도 80% 도달 후에는 주간보고  
\* 연승은 전장 20m 이상 선박만 해당. 선망 · 연승 이외 어법은 분기보고
- (사무국) TAC 80% 도달 시, 모든 CPC에게 통보

### ■ FAD 관리조치

구 분	기 존 (16-01)	변 경 (2020년 잠정 적용)
금지 기간	1~2월	('20년) 1~2월, ('21년) 1~3월
금지 장소	기니만 (서경 20도, 남위4도, 북위 5도)	대서양 전 수역
허용 개수	500개	('20년) 350개, ('21년) 300개

### ■ 연승 옵서버 커버리지

- (10%로 상승) 2022년까지 EM(전자감시) 시스템 및/또는 사람 옵서버를 통하여 커버리지 10% 보장
- (EM 최소기준) 통합감시조치(IMM) 작업반이 SCRS와 협력하여 2021년 연례회의까지 EM에 관한 권고 수립

## 2. 챕터 주요 제안서

제 목	제 출	주요 내용
선박목격	IMM 작업반	불법어업 추정 외국·무국적선 발견 시 선박 관련 정보를 기국·사무국에 통보
지역옵서버 안전	IMM 작업반	지역옵서버에게 옵서버 제공자가 안전장비 의무 제공, 비상상황 절차 수립
유기, 분실 또는 폐기된 어구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2m 이상 선박 : 분실 어구 회수 장비 비치</li> <li>• 분실 어구 회수 위해 가능한 모든 시도 할 것</li> <li>• (대상) 연승어구에는 적용되지 않음</li> </ul>
북대서양 청새리상어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AC 39,102톤(EU 32,578톤, 일본 4,010, 모로코 1,644톤)</li> <li>• 그 외 : 최근 수준으로 어획량 유지 노력 의무</li> </ul>

남대서양 청새리상어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TAC 28,923톤</li><li>• CPC별 어획한도 미설정</li></ul>
녹새치 · 백새치 복구계획 수립	미국, EU, 브라질, 파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TAC) 녹새치 1,670톤, 백새치 355톤</li><li>• (한국쿼터) 녹새치 29.4톤, 백새치 20톤</li><li>• 생존 어류를 가능한 한 안전하게 방류</li></ul>
청상아리	의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선원 안전 고려하여, 상처 최소화하도록 방류</li><li>• 죽은 채로 올라오고, 옵서버 존재 시 보유 가능</li></ul>
옵서버 안전 결의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불법어업에 관한 FAO/IMO/ILO 작업반 결과 검토</li><li>• 옵서버 안전 관련 선주, 선원, 운항자 간 대화 증진</li></ul>
참다랑어 통제 · 추적 조치 결의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어획 · 교역 과정 내 조치 흡결 확인</li><li>• 내년 패널2 회기간 회의 전 작업반 회의 개최</li></ul>

### 3. 미채택 제안서

제 목	제 출	주요 내용
전재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22년까지 전장 24m 초과 연승선은 선내 옵서버 또는 EM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만 해상 전재 가능 ⇒ (일본) 제출기한 미준수 이유로 논의 반대</li></ul>
바다거북	미국 외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수심 100m 이내 조업 연승선은 i) 환형낚시, ii) 물고기 미끼 iii) SCRS·총회에 의해 승인된 방법 중 적어도 하나의 조치 채택 ⇒ (일본) 어획효율 높은 J-후크, 오징어 대신 환형낚시, 물고기 미끼 의무는 비용 수반하므로 반대</li></ul>

### 4. 협약 개정 의정서 채택 ( → 서명 절차 개시)

- (배경 및 경과) 변화된 조업상황을 반영하고자 2012년부터 시작된 작업으로, 올해 1월 문안 검토 회의 후, 5월(초안) · 8월(수정안)에 개정 협약문 회람
- (발효 요건) 체약국 3/4의 비준(수락 또는 승인) 시, 비준 체약국에 발효  
⇒ 발효 이후 비준 체약국은 비준 시점에서 발효
- (미서명 국가) 중국, 멕시코, 터키, 과테말라, 모로코, 알제리, 한국, 가봉, 이집트, 기니비사우, 라이베리아, 트리니다드 토바고, 쿠라소 등 13개국 이상은 국내절차 미완료하여 의정서에 미서명



- (개정 내용)

구 分	기 존	변 경
협약 목적	최대 지속가능한 어획	장기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할 어종	다랑어, 다랑어 유사종(새치)	판생류(상어, 가오리) 포함
권고 발효	체약국 통보 후 6개월	회원국 통보 후 4개월
조업 실체	-	회원국과 동등한 권리 · 의무 부여(일부 조항 제외)

## 5. 재정 · 행정사항

- 2020 · 2021년 예산 · 분담금 결정

구 分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예산	4,008,554유로 (52억 3,698만 원)	4,222,708유로 (55억 5,134만 원, 5.34% ▲)	4,433,750유로 (58억 2,878만 원, 5.00% ▲)
한국 분담금	27,322유로 (3,591만 원)	28,854유로 (3,793만 원, 5.63% ▲)	30,143유로 (3,962만 원, 4.5% ▲)

- 2020 · 2021년 의장단 선출

- (투표) 패널1 의장 교체안(미국, 코트디부아르⇒미국)에 대해 공개 투표 실시

찬 성 (20)	반 대 (23)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프랑스, 영국,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터키, 니카라과, 온두라스, 과테말라, 파나마, 벨리즈, 세인트 빙센트 그레나다, 카보베르데, 알바니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코트디부아르, 모리타니아, 튜니지, 알제리, 리비아, 세네갈, 트리니다드 토바고, 이집트, 상토메 프린시페, 모로코, 가나, 시에라리온, 리비아, 감비아,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필리핀

- (투표) 패널

구 分	총회	이행위	상설작업반	재정위	패널1	패널2	패널3	패널4
국적	파나마	미국	EU	터키	코트디부아르	일본	남아공	브라질

## ■ 차기 회의 일정

회 의	일 정	장 소
패널1 회기간 회의	2020년 3월 30일–4월 2일	미정
패널2 회기간 회의	2020년 3월 2일–3월 6일	스페인
패널4 회기간 회의	2020년 7월 6일–7월 10일	스페인
제22차 특별회의	2020년 11월 21일–11월 30일	터키

## III. 제 · 개정 보존관리조치 목록

번호	보존관리조치 제목
권고 19-01	다랑어와 다랑어 유사종 또는 대양, 원양, 및 고도회유성 판새류로 간주되는 어류에 관한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on fishes considered to be tuna and tuna-like species or oceanic, pelagic, and highly migratory elasmobranchs)
권고 19-02	열대다랑어 다년 보존관리 프로그램에 관한 ICCAT 권고 16-01을 교체하는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to replace Recommendation 16-01 by ICCAT on a multi-annual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ogramme for tropical tunas)
권고 19-03	북대서양 황새치 보존을 위한 ICCAT 권고 17-02를 수정하는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amending the Recommendation 17-02 by ICCAT for the conservation of North Atlantic swordfish)
권고 19-04	동부대서양과 지중해 참다랑어 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권고 18-02를 수정하는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amending the Recommendation 18-02 establishing a multi-annual management plan for bluefin tuna in the eastern Atlantic and the Mediterranean)
권고 19-05	녹새치 및 백새치 회복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to establish rebuilding programs for blue marlin and white marlin/ roundscale spearfish)
권고 19-06	ICCAT 어업과 관련하여 어획되는 북대서양 청상아리의 보존에 관한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on the conservation of North Atlantic stock of shortfin mako caught in association with ICCAT fisheries)



권고 19-07	ICCAT 어업과 관련하여 어획되는 북대서양 청새리상어의 보존을 위한 관리조치에 관한 권고 16–12를 수정하는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amending the Recommendation 16–12 on management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North Atlantic blue shark caught in association with ICCAT fisheries)
권고 19-08	ICCAT 어업과 관련하여 어획되는 남대서양 청새리상어의 보존을 위한 관리조치에 관한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on management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South Atlantic blue shark caught in association with ICCAT fisheries)
권고 19-09	선박목격에 관한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on vessel sightings)
권고 19-10	ICCAT 지역옵서버 프로그램 옵서버의 건강과 안전의 보호에 관한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on protecting the health and safety of observers in ICCAT's regional observer programs)
권고 19-11	유기, 분실 또는 투기된 어구에 관한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on abandoned, lost or otherwise discarded fishing gear)
권고 19-12	온라인 통합 보고 시스템의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ICCAT 권고 (Recommendation by ICCAT to continue the development of an integrated online reporting system)
결의 19-13	개정된 ICCAT 협약 하 조업실체의 참여에 관한 ICCAT 결의 (Resolution by ICCAT regarding participation by fishing entities under the amended ICCAT Convention)
결의 19-14	북대서양 황새치 초기 관리목표의 개발에 관한 ICCAT 결의 (Resolution by ICCAT on development of initial management objectives for North Atlantic swordfish)
결의 19-15	참다랑어 통제 추적 조치에 관한 ICCAT 작업반을 수립하는 ICCAT 결의 (Resolution by ICCAT establishing an ICCAT working group on bluefin tuna control and traceability measures)
결의 19-16	개선된 옵서버 안전과 조화에 관한 ICCAT 결의 (Resolution by ICCAT on harmonisation and improved observer safety)
결의 19-17	ICCAT 관할어업에서 검색관의 자발적 교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수립하는 ICCAT 결의(18-11)를 수정하는 ICCAT 결의 (Resolution by ICCAT amending the Resolution(18-11) by ICCAT establishing a pilot program for the voluntary exchange of inspection personnel in fisheries managed by ICCAT)

# 9

## 제16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16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 연례회의  
(회의명 영문) 16<sup>th</sup> Regular Session of the Commission
- 기간/장소 : 2019. 12. 5.~11.(6일간) / 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 의장 : 김정례 (대한민국)

#### 2. 참석규모

- 참가국 : 26개 회원국(미국, EU,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협력적 비회원국 및 옵서버 등  
30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원양산업과 양영진 과장 외 13명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양영진
	국제협력총괄과 주무관	김정례
	국제협력총괄과 전문관	나일강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초빙연구원	김장근
조업감시센터	조업감시팀 주무관	홍문태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협력1부 대리	최봉준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서동진

\* 업계(동원산업, 동원수산, 사조산업, 신라교역, 한성기업) 관계자 7명 동행



## II. 회의결과

### 1. 어종별 어획전략 및 보존관리조치 논의

- (가다랑어 TRP) 가다랑어 목표기준점(TRP)\*을 현행 50%(SBF=0)에서 42%(SBF=0)로 조정해도 50%와 동일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과학위원회 평가에 대해서 조업국들이 기준년도인 2012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점 그리고 평가에 ‘노력량 크리이프(effort creep)\*\*’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하여,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에게 평가 의견을 수정·보완하여 차기 회기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목표기준점(Target Reference Point): 자원관리 목표 달성을 위한 기준점

\*\* 노력량 크리이프(effort creep): 조업 선박의 척수 및 조업 일수와 같은 어획 노력을 제한하더라도 어획 강도가 높은 어구·어법의 도입으로 인하여 선박의 조업능력이 향상되는 현상

- (눈다랑어 및 황다랑어 TRP) CMM 2018-01 제15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금번 회의에서 눈다랑어와 황다랑어에 대한 TRP를 개정하여야 했으나 TRP 수립 방식과 절차에 이견이 있음으로 인하여 위원회는 기존의 잠정 TRP를 규정한 CMM 2018-01 제12항 내지 제14항을 일단 유지하는 한편, 과학위원회·과학서비스제공자에게 이 두 어종에 대한 추가 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차기 회의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 북방 날개다랑어에 대한 기존 보존관리조치(CMM 2005-03)의 제3항에 명시된 ‘어획량 보고 의무를 삭제한 개정안’이 채택됨.
-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당해연도의 어획한도량 미소진분을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는 등 기존 태평양 참다랑어에 대한 보존관리조치(CMM 2018-02)를 일부 수정한 개정안이 채택됨.

\* 2020년에 한시적으로 어획한도량의 최대 17%까지 이월 허용

- (새치류 어획전략) 남태평양 청새치 자원량을 2034년까지 20%SSBF=0로 회복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임시 자원회복계획이 채택됨.

### 2. 기타 주요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논의

- (상어·가오리 보존관리조치) CMM 2014-05, CMM 2011-04 등기존 상어류 보존관리조치를 대체하는 새로운 상어에 대한 보존관리조치(CMM 2019-04)가 채택됨\*.

\* 효력발생일은 2020년 11월 1일로 정함.

- (FAD 정의 개정) 어류군집장치(FAD)를 보다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정의를 보다 구체화할 것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제안하였으나 연안국들이 정의 개정 시 국내법 개정이 수반된다는 이유로 반대하였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FAD 관리 논의를 내년 작업반 회의에서 다른 기로 결정함.

### 3 조업제한 및 감시·감독·통제 관련 사안 논의

- (공해수역 조업제한) 연안국들은 TRP 달성을 위해서 공해수역 어획한계량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과 미국 등 조업국들은 열대성 참치 어군이 공해에서 더 많이 출몰하는 추세이므로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일을 공해 조업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신설이 필요함을 주장하여 양측 간 의견이 침예하게 대립하였고,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공해수역 조업제한을 차기 연례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함.
- (관리전략 평가) 위원회는 ‘관리전략 평가(Management Strategy Evaluation)’와 관련하여 과학위원회·과학서비스제공자에게 복수어종 접근방식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음.
- (전자보고·전자감시) 전자보고(e-reporting) 및 전자감시(e-monitoring)의 취지가 옵서버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옵서버가 제공한 데이터 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것임을 확인하였음.

### 4. 어업 데이터 공유 관련 논의

- (SPRFMO와 체결할 양해각서)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와 체결할 양해각서 초안을 논의·수정하면서 비공개 데이터를 공유하는 약정 내용에 대해서 조업국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뉴질랜드가 고도회유성 어종과 상관이 없는 데이터로 공유량이 적고 IUU 어선에 대한 정보 교환도 단순한 목록 교환임을 해명하여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현재와 관련된 데이터를 공유하는 약정에 대해서는 일본과 EU에 의해서 ‘필요 시 공유한다’는 조건이 추가된 양해각서 초안이 채택됨.
- (일본의 VMS·AIS 데이터 비교 연구 제안) 본회의장에서 전반적으로 지지를 받았음에도 일본이 일단 제안을 철회하고 추후 필요 시 과학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다시 제의하기로 결정함.

### 5. 부수어획 경감조치 논의

- (바닷새) 기존 바닷새 부수포획 경감조치(CMM 2018-03)에 ‘알바트로스와 바다제비 보호협정(ACAP)’의 바닷새 안전 방류 지침을 추가보완하는 뉴질랜드 제안이 채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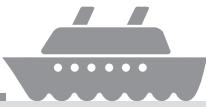


- (고래류) 한국이 고래류 보호조치를 제안하였으나 일본이 과학적 근거 부족 및 구체적 보호 대상 종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제안 채택을 반대하였고, 이에 한국이 제안의 취지가 당장 보호조치로 채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래류 보호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등 사전작업을 개시하여 고래류 보호조치 수립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과학 위원회에게 고래류 안전 방류 방안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차기 연례회의에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함.

### III. 제 · 개정 보존관리조치 목록

번호	보존관리조치 제목
CMM 2019-01	협력적 비회원국 (Cooperating Non-Members)
CMM 2019-02	태평양 참다랑어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Pacific Bluefin)
CMM 2019-03	북태평양 날개다랑어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North Pacific Albacore)
CMM 2019-04	상어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Sharks)
CMM 2019-05	WCPFC 협약수역 내 어업과 관련하여 어획된 쥐가오리에 관한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on Mobulid Rays caught in association with fisheries in the WCPFC Convention Area)
CMM 2019-06	이행감시제도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the Compliance Monitoring Scheme)
CMM 2019-07	중서부태평양해역 내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목록을 수립하기 위한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to establish a list of vessels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ctivities in the WCPO)
CMM 2019-08	용선 통보 제도 보존관리조치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 for Charter Notification Scheme)
결의 2019-01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기후변화의 관련성에 관한 결의 (Resolution on Climate Change as it relates to the Western and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 제3장 통상

1. WTO 수산보조금 회의 .....	76
2. 제2차 한·MERCOSUR 무역협상 .....	80
3. WTO 수산보조금 회의 .....	81

# 1

## WTO 수산보조금 규범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규범회의
- 일시/장소 : 2019. 1. 13.~20., 2019. 2. 25.~ 3. 2. / 스위스 제네바

#### 2. 참석규모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과장	이규선
	통상무역협력과 사무관	황진실
외교부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최성요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주무관	김태진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김사라

### II. 회의 주요 내용

- 협상 타결을 위해 최대한 규율을 간소화하는 필요성 대두
  - \* IUU 및 과잉어획상태 어족에 대한 규율 간소화
- 수산규제가 아닌 수산 보조금에 집중 필요성 강조
- 국제기구·국제협정에서 합의된 기준 정의 활용
- 주요쟁점별 개도국 우대조치 논의



### III. 회의 주제별 내용

#### 1. IUU 어업에 기여하는 수산 보조금 금지

- (IUU 어업의 정의) IPOA-IUU 정의를 사용하는 것으로 다수국 공감
- 각 국가의 내부 제도에 따른 IUU어업 규제에 집중할 필요
- 구속력 있는 RFMO와 권고수준 RFMO의 차등대우 필요성 논의

#### 2. 과잉어획상태 어족에 대한 수산 보조금 금지 논의

- (규율 간소화) 호주, EU 등이 ‘과잉어획된 어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보조금 금지’와 같은 간단한 규율 제안
  - \* 과잉어획상태 판단에 대해서는 기존 국제기구의 정의 사용
  - \* 각 국가 또는 RFMO의 과잉어획 상태 판정 존중
- (자원고갈의 원인) 수산 자원량 고갈을 초래하는 다양한 원인 존재
  - 보조금 외 낮은 자원량의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보조금은 자원량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의견이 제시됨
- (부정적 영향) 부정적 영향 판정 요건 명시 필요성 논의
  - \* 보조금 금지가 발동되기 위한 4가지 요건: ① 보조금이 존재하고, ② 어족이 과잉어획 상태이며, ③ 부정적 영향 판정이 있고, ④ 인과관계 존재
    - 부정적 영향평가를 위한 기준 또는 요건을 목록화하는 방안 관련 기존 반덤핑협정 및 SCM 협정상의 방식 논의 가능성성이 제기됨
    - \* 반덤핑협정 제 3.4조 및 SCM 협정 제 6.3조와 6.6조 참조
- (수산자원관리제도) 수사자원관리계획이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의 해로운 영향을 방지완화할 수 있는가 여부 논의
  - 일본은 수산자원관리계획을 과잉어획된 어종에 대한 보조금 규율뿐만 아닌 모든 규율에 적용 가능하다는 입장
  - 개도국들은 수산자원관리계획에 대한 의무 부과 또는 의무 향상반대
- (미평가자원) 미평가자원의 경우 사전예방적 접근방식 필요

- (긍정적 보조금) 이로운 보조금에 대한 목록 필요 입장과 보조금별 (case-by-case) 영향평가가 필요하므로 사전적 제외 반대 입장 대립
- (공유 어족) 고도회유성 어족 또는 공유 어족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 이전에 관련 국가들 간의 협의할 필요성 논의

### 3. 과잉능력 및 과잉어획에 대한 수산 보조금 금지 논의

- 과잉능력과 과잉어획에 대한 국제적 정의가 부재한 것에 공감하고, 과잉능력과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보조금을 규율하는 방법 논의

\* ① 특정 보조금을 목록화하여 금지, ② 보조금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금지, ③ 두 가지 방식을 접목하여 금지(하이브리드 방식), ④ 지급 가능한 보조금 금액의 상한을 설정하여 금지(cap 설정 방식)

- (목록화 방식) 목록의 내용과 목록 설정 방식이 불명확하며 어업활동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 대우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어업활동의 규모(소규모·영세어업/산업형 어업), 공유어족, 원양어업

- 보조금 상한액 설정 방식\*) 지급 가능 보조금의 감축여부와 운영방식 논의

\* 장점: 과잉능력 또는 과잉어획에 대한 정의 불필요, 자원평가에 대한 개도국 우려 해소 / 단점: 과도한 유연성 제공

- 특정 해로운 보조금을 우선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모든 보조금에 대해 상한을 설정하는 방식\*과 이로운 보조금의 상한액 적용 여부 논의

\* 이 경우 특정 해로운 보조금 금지 목록의 필요성이 제기됨

- 금지, 조치 가능, 허용보조금으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SCM 협정과 유사하지만 조치 가능 보조금에 대한 상한액 설정이 추가됨

- (저개발 국가) 저개발 상태의 개도국 및 LDC의 경우 능력 증강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논의

- (긍정적 보조금) 이로운 보조금에 대한 명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과 명확성을 위해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 대립

\* 이로운 보조금은 부정적 영향평가를 통해 규율 적용 제외할 것이므로 명시 불필요

\*\* 보조금별 상의한 영향 관련 OECD 수산지원정책의 영향 분석 보고서 참고

- SCM 협정상 허용보조금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으므로 수산보조금 관련 허용보조금 설정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 4. 잔여 논의 쟁점

- (개도국 특별대우)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재량 필요성이 강조됨
  - \* 개도국 및 LDC는 특히 과잉능력·과잉어획 관련 보조금 규율에 대한 우려를 나타냄
  - 단, 주요 어획국 순위에 있는 개도국들은 개도국 우대조치 활용 자체 필요 논의
  - 국제 수산업은 개도국과 선진국으로 구분되지 않으므로 보조금 상한액 설정이 소규모·영세·생계 어업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개도국 우대 논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기됨
- (통보) 수산보조금협정 이행을 위해 통보의무의 중요성이 강조됨
  - 호주는 IUU 어업 관련 규정 및 절차 또는 수산관리제도 등은 사전적으로(upfront) 상세 통보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제도규정) 수산보조금 규율의 최종 형태\*에 따라 해당 규율 논의 필요
  - \* SCM 협정 부속서 형태 또는 별도 협정문 형태
  - 분쟁해결 절차는 SCM 협정 또는 분쟁해결양허(DSU) 수준 이하는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과 외부전문가 활용에 대한 논의 진행
- (분쟁수역) 분쟁수역의 경우 보조금 금지 또는 관련 국가들 간의 협의 후 보조금 지급

## 5. 양자 면담 (EU, 호주, 대만, 일본, 캐나다, 멕시코 양자)

- (EU) EU는 TRIPs 제 41조의 방식을 참고하여 보조금의 최소허용기준을 정하고, 구체적인 이행은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하는 내용의 IUU 금지 규정을 컨셉 노트를 통해 공유
- (호주) 호주 제안은 TPP 방식에 WTO 보조금협정의 피해(injury) 판단 구조를 차용하는 방안을 채택
- (대만) 대만은 전체적으로 새로운 제안이 정책 재량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에도 소규모 어업, 면세유 측면에서 정책재량을 높이기 위해 우리 측과 공조를 희망
- (일본) 일본은 호주의 과잉어획 규율 관련 제안서와 EU의 IUU 문안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미국의 CAP 안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으로 평가
- (캐나다) 캐나다는 CPTPP 회원국으로써 해당 규율에 존재하는 사항과 유사한 호주의 과잉어획 어종 제안서에는 긍정적인 반면, EU의 IUU 컨셉노트에 대해서는 CPTPP 규율에 모호한 절차적 요소를 추가한 미완성된 규율이라고 평가
- (멕시코) 멕시코는 지난 12월 정권교체 이후 수산보조금 관련 신규 제안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입장

# 2

## 제2차 한·MERCOSUR 무역협상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제2차 한·MERCOSUR 무역협상
- 일시/장소 : 2019. 4. 2.~6. / 서울

#### 2. 참석규모

-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외수산협력센터



### II. 회의결과

- (상품 양허) 메晰이 브라질의 정치적 상황 등을 이유로 상품양허 교환에 필요한 협상세칙 합의에 반대하여 2차 협상에서 재논의
- (상품 협정문) 아국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에 대해서도 메晰은 민감한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메晰의 입장을 미제시
-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조항에 대해 메晰은 특정 농산물의 제외를, 아국은 농산물 외에 수산물도 적용 가능함을 강조하여 쟁점화 예상
- (지속기능발전) 메晰이 ‘어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 조문을 신규 제안한 바, 아국은 즉답을 피하고 다음 협상에서 논의
- (협력) 메晰은 양측이 협력 가능한 분야에 수산·양식업도 추가되길 희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다음 협상에서 피력키로 함
- (원산지) 양측 제안 협정문안을 토대로 다음 협상에서 통합문안을 작성키로 하였으며, 주요 챕터별로 PSR 논의를 진행키로 함

# 3

##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규범회의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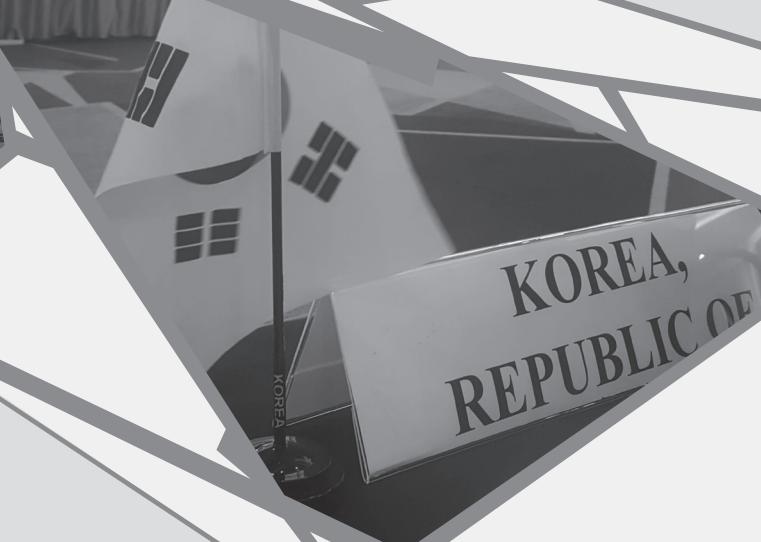
- 회의명 :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규범회의
- 일시/장소 : 2019. 5. 5.~12. / 스위스 제네바

#### 2. 참석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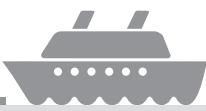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외교부	주제네바 대표부 참사관	최성요
	1등 서기관	장성화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사무관	황진실
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주무관	김태진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김사라

### II. 회의결과

분야	국가(제안일)	주요 내용
IUU	EU ('19.2.21. 비공식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UU 어업 억제 및 근절을 위한 국내절차 마련 의무</li> <li>- RFMO, 기국, 항만국 또는 시장국의 IUU 판정 등을 포함하여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국이 최종적으로 금지 여부 결정</li> <li>• 해당 국내절차의 WTO 통보</li> </ul>
	대만 ('19.3.27. 비공식 공유)	
과잉 어획 어종	호주 ('19.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잉어획, 부정적 영향의 존재, 인과관계, 보조금의 형태 · 성질 등을 고려하여 금지</li> <li>- ASCM 구조를 차용하여, 객관적으로 부정적 영향의 존재를 판단하고 보조금과 부정적 영향 간 인과관계 고려</li> </ul>
	호주 수정제안서 ('19.2.28.)	
과잉 능력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19.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잉어획능력 또는 자원을 감소시키는데 기본비용 · 운영비용 보조금 금지</li> <li>• 단, FMS 등 자원관리에 대한 정책 보유 증명 시 금지 제외</li> </ul>
	미국, 호주 ('19.3.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UU와 과잉어획 어종 규율은 별도로 적용하면서, 공해상 어업에 대한 보조금 전면 금지</li> <li>• 금지 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은 감축 의무를 전제로 상한을 설정하면서 상한 내에서만 지급</li> </ul>



SECRETARIA  
DEL  
COSUR  
URUGUAY



## 제4장 기타

1.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해양협력 워크샵 ..... 84

# 1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해양협력 워크샵

### I. 회의개요

#### 1. 회의개요

- 회의명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해양협력 워크샵  
(회의명 영문) EAS Workshop on Maritime Cooperation
- 기간/장소 : 2019. 11. 18.~19.(2일간) / 필리핀 마닐라

#### 2. 참석규모

- 참가자 : 아세안 국가 및 미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등 약 50여 명
- 우리나라 대표단 : 해외수산협력센터

기관명	부서 및 직위	성명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협상지원팀 전문관	원태훈

### II. 회의결과

#### 1. 세션 1 : 과학기반 수산관리 (Science Based Fisheries Management)

-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수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필리핀, 중국, 인도네시아, 호주 연사들의 자국 사례 소개 및 발표
  - 체장기반 분석, 해양보호구역 설정, 수산물 품질 및 질량에 대한 위험평가 등 실행 중

#### 2. 세션 2 : 기후변화, 재난위험완화관리, 지속가능한 소규모 어업 (Climate Change, Disaster Risk Reduction Management, and Sustainable Small Scale Fisheries)

- 기후변화가 필리핀 수산업 및 어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필리핀 연사들의 발표
  - 필리핀 소규모 어민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이에 기후변화 관련법을 제정하고 기후변화 적응 노력을 이어가고 있음
  - 필리핀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규모 어민 관리 중이며,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규모 파악 중



### 3. 세션 3 : IUU 어업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 (Initiatives to Address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IUU 어업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미국, 아세안, 뉴질랜드, 필리핀이 실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발표 및 소개
  - 항만국조치 협정(PSMA) 가입, 지역수산기구를 통한 IUU 어업 방지 등 국제협력을 통한 노력이 진행 중
  - 아세안 국가들의 전자증명제도 개발 및 데이터 수집, 관련법 개정을 통한 제도 강화

### 4. 세션 4 : 생산 후 손실 대응 (Addressing Post Harvest Losses)

- 수산 및 양식 공급사슬(Supply chain)에서 발생하는 생산 후 손실을 줄이고 예방하기 위한 노력 및 방법 발표
  - 평균 35~40%의 수확물이 공급사슬에서 버려지는 상황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콜드체인(Cold Chain) 개선을 통한 폐기율 감소가 가장 중요
  - 필리핀은 일정 크기 이상 선박 내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손실률을 줄이고 있음
  - 또한 어촌에 컨테이너 공급 등 인프라 지원도 실행 중

### 4. 세션 5 : 지속가능한 양식 및 내수면 어업 (Sustainable Aquaculture and In-land Fisheries)

- 지속가능한 양식과 내수면 어업을 위한 제도 등에 관한 국가 노력과 양식과 환경오염의 관계, 기회 및 도전과제 등에 관한 발표
  - 필리핀은 좋은 관행(good practices)으로 생산된 양식물에 양식 증명서(aquaculture certification)를 발행하고, 양식 생물 건강을 위한 백신 개발을 통한 상품성 향상 등 지속가능 양식 도모
  - 태국은 양식장으로부터 수질오염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청에서 시정조치를 취하고, 배수 (drainage) 통제 및 관리 등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 중
  - 인도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양식 발전 및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부기구를 설립하고, 1979년 제정된 해양수산법을 시작으로 2017년 포괄적 해양정책을 수립, 상어종 보호, 몬순(monsoon) 시즌에 61일 EEZ 금어기 설정 등 지속가능 어업을 위한 정책 실행 중

2019 해외수산협력센터  
**국제수산협상 연간 백서**

발 행처 해외수산협력센터

발 행 일 2020년 4월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53 에스빌딩 6층

전 화 044-868-7364

인쇄디자인 크리커뮤니케이션(02-2273-1775)





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

